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1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6 - 33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전략담당관)	별책
2026 - 34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재무과)	1
2026 - 3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6
2026 - 3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재무과)	25
2026 - 37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경제기업과)	28
2026 - 38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진흥과)	32
2026 - 39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 (관광진흥과)	38
2026 - 40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도시건축과)	39
2026 - 4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도시건축과)	42
2026 - 42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도시건축과)	86
2026 - 43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미래농업과)	95
2026 - 44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미래농업과)	97
2026 - 4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유기농복합단지 융복합시설 구축) 공모 신청 보고(미래농업과)	99
2026 - 46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행복농촌과)	102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의안 번호	2026 - 3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거창군 금고 공공자금 운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금고 자금 운용 현황

○ 회계별 자금운용 평균잔액 현황

(2025년 하반기)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비 고
합 계		269,336,118	237,333,765	32,002,353	
일반회계		174,371,695	159,005,480	15,366,215	
특별회계	공기업	14,907,135	11,267,137	3,639,998	
	기 타	10,061,111	1,005,455	9,055,656	
기 금		69,996,177	66,055,693	3,940,484	

※ 평균잔액 : 월 또는 분기(기간)별 계좌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

나. 이자수입 현황

○ 총괄 현황

(2025년 하반기)

(단위:천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비 고
		공기업	기 타		
6,404,510	4,183,230	295,169	81,018	1,845,093	

다. 군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사항

○ 경영실태 평가

구 분	1금고(농협은행)	2금고(경남은행)	비 고
경영실태	경영관리 적정 (1등급 / 1등급)	경영관리 적정 (2등급 / 2등급)	

※ 세부경영지표

항 목	평가시기	1금고(농협은행)		2금고(경남은행)	
총자본비율	2025년 9월말	18.56	1등급(우수)	14.89%	2등급(양호)
고정이하여신비율	2025년 9월말	0.49	1등급(우수)	0.86%	2등급(양호)
자기자본이익율	평가대상아님				
대손충담금적립율	평가대상아님				

○ 재무건전성 평가

구 분	1금고(농협은행)	2금고(경남은행)	비 고
재무건전성	투자적격	투자적격	

※ 측정지표

구 분	외국평가기관					
	Moody's		S&P		Fitch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1금고 (농협은행)	Aa3	P-1	A+	A-1	A	F1+
2금고 (경남은행)	A2	P-1				

구 분	국내평가기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1금고 (농협은행)	AAA	AAA	AAA
2금고 (경남은행)	AA+	AA+	AA+

라.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수익률, 이자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간 (상품별)	평균잔액 (12.31기준)	금 리 (%)	이자액	수익률 (%)	
총 계			269,336,118		6,404,510	2.16	
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소 계	174,371,695		4,183,230		
		공공예금	15,366,215	0.65	654,388		
		1개월	34,545,206	2.35~2.60	830,607		
		3개월	91,090,411	2.10~3.00	2,698,235		
		6개월	9,780,822	2.25	0		
		1년이상	23,589,041	2.65	0		
	특별회계	합 계		9,928,899		79,947	
		주차장	소계	504,410		9,457	
			공금예금	258,407	0.65	1,679	
			12개월	246,003	2.84~3.18	7,778	
		농업인소득지원	공금예금	2,179,027	0.65	14,163	
		의료급여	공금예금	49,217	0.65	320	
		댐주변지역	공금예금	883,271	0.65	5,623	
		발전소주변지역	공금예금	9,251	0.65	60	
		산업단지조성	공금예금	5,150,157	0.65	33,475	
		골프장사업소	소계	1,153,566		16,849	
			공금예금	394,114	0.65	1,576	
			3개월	230,137	2.1	1,177	
			4개월	529,315	2.1	14,096	
		기금	합 계		69,996,177		1,845,093
식품진흥	소 계		144,771		3,907		
	공금예금		18,939	0.65	123		
	12개월		125,832	3.00	3,784		
재난관리	소 계		3,872,518		82,410		
	공공예금		1,597,241	0.65	10,382		
	12개월		2,275,277	2.64~3.24	72,028		
아름예술제진흥	소 계		533,421		15,648		
	공금예금		2,624	0.65	17		
	6개월		530,797	2.74~3.21	15,631		
노인복지	소 계		1,129,535		34,564		
	공금예금		82,535	0.65	536		
	12개월		1,047,000	2.84~3.18	34,028		
고향사랑	소 계		860,510		15,418		
	공금예금		252,894	0.65	1,644		
	6개월		607,616	2.74~2.94	13,774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간 (상품별)	평균잔액 (6.30기준)	금 리 (%)	이자액	수익률 (%)	
1금고 신안협행	기 금	중소기업육성	소 계	4,361,819		44,364	
			공급예금	336,066	0.65	2,184	
			6개월	131,507	2.89	4,430	
			12개월	794,246	2.64~3.25	35,750	
			36개월	3,100,000	3.55	0	
		체육진흥	소 계	1,131,707		36,339	
			공급예금	458	0.65	3	
			12개월	1,131,249	2.84~3.25	36,336	
		재정안정화	소 계	42,844,746		1,148,251	
			공급예금	111,599	0.65	725	
			3개월	11,160,758	2.08	232,582	
			6개월	20,832,877	2.24~2.71	568,131	
			12개월	10,739,512	2.74~2.92	346,813	
		통합재정	소 계	13,321,066		411,753	
			공급예금	1,351,907	0.65	8,787	
			6개월	247,401	2.24		
			12개월	11,721,758	2.08~3.16	402,966	
		옥외광고발전	소 계	316,287		6,028	
			공급예금	66,424	0.65	432	
			6개월	43,836	2.81	2,596	
	12개월		106,027	2.99	3,000		
	36개월		100,000	3.54			
	자활	소 계	1,479,797		46,411		
		공급예금	119,797	0.65	779		
12개월		1,360,000	2.39~3.25	45,632			
2금고 경남협행	특 별 회 계	합 계		15,039,347		296,240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132,212	0.70	1,071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5,947,006		122,509		
		공공예금	1,244,251	0.70	8,248		
		1개월	227,397	1.95	4,294		
		2개월	534,264	1.95	10,046		
		6개월	2,590,410	2.20~2.40	60,019		
		12개월	1,350,684	2.50~3.15	39,902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8,960,129		172,660		
		공공예금	2,395,747	0.70	19,396		
		1개월	172,602	1.95	3,334		
		12개월	6,391,780	2.50~3.15	149,930		

3. 관계법령 : [붙임] 참고

가.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

나.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 8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2015.7.22.)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8.1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6 - 3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변경)	담당부서	전략담당관
-----------------------------------	------	-------

1. 제안이유

- 가. 거창군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목적에 따라 **행정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용도폐지) 및 일부 처분(매각)**하여 사업 재원 일부를 환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64번지 일원
- 2) 사업기간 : 2023. ~ 2027.
- 3) 사업면적 : 96,638㎡ / 80필지
- 4) 사 업 비 : 32,205백만원(군비 100%)

구분	계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	비고
금액(백만원)	32,205	2,564	9,625	16,700	3,316	
구성비(%)	100	7.9	29.9	51.9	10.3	

5)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조성

- 주요 예정 시설

- (의료)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과300병상/응급·심혈관센터 등
- (임신)행복맘센터 : 영아·임산부 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 (출산)공공산후조리원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등
- (육아)육아드림센터 : 영유아 종합돌봄시설

나. 처분재산 세부내역 : 【붙임1】참조

- 1) 처분면적 : 12필지 15,300㎡ 중 6,977㎡
- 2) 처분내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생활시설용지(총17블록 설정)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 이하	

- 3) 처분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 4) 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

다. 추진경과

- 1) 202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 2) 2023.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부지 확정
- 3) 2023. 9.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4) 2023. 11.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5) 2024. 8. :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6) 2025. 3.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경상남도)
- 7) 2025. 8. : 실시계획인가 고시
- 8) 2025. 12. : 토지매입 완료(일부 수용재결)

라. 향후계획

- 1) 2026. 2.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 2) 2026. 3. : 근린생활시설 용지 감정평가 및 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 3) 2026. 4. ~ 5. :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양 홍보
- 4) 2026. 6. : 공급공고 및 일반(경쟁)입찰, 계약체결
- 5) 2026. 9. : 병원용지 등 조성원가 산정 및 계약(교환) 체결

마. 기대효과

- 1) 의료복지타운 이용자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2) 잔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토지 관리의 합리성 확보
- 3) 매각 대금 확보를 통한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비 일부 환수
- 4) 공공·민간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 조성

3. 위치도 및 배치도 : 【붙임2】참조

4. 관계법령 【붙임6】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붙임1

처분재산 내역(토지)

○ 처분재산 내역(12필지 15,300㎡ 중 6,977㎡)

(단위 : ㎡, 원)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처분면적		
계	12필지		15,300	6,977	313,131,000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1,043	63,205,800	60,600/㎡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780	47,268,000	60,600/㎡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246	9,397,2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96	3,667,2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71	2,797,4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965	38,021,0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760	29,944,0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84	3,309,6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509	20,054,6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750	29,550,0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1,162	45,782,800	39,400/㎡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511	20,133,400	39,400/㎡

○ 블록별 세부내역

(단위 : ㎡, 원)

획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처분 면적	기준 가격	용도 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17블록)			12필지		15,300	6,977	313,131,000	
A1	1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426	25,815,600 (60,600/㎡)	준주거 지역
	2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465	28,179,000 (60,600/㎡)	
	3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152	9,211,200 (60,600/㎡)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314	19,028,400 (60,600/㎡)	
4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466	28,239,600 (60,600/㎡)		
A2	1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238	9,091,6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94	3,590,800 (38,200/㎡)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68	2,679,200 (39,400/㎡)	

회 지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적	처 분 면 적	기 준 가 격	용 도 지 역	
	2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8	305,600 (38,200/m ²)	준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2	76,400 (38,2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3	118,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391	15,405,400 (39,400/m ²)	
	3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405	15,957,000 (39,400/m ²)	
	4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169	6,658,6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238	9,377,200 (39,400/m ²)	
	5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401	15,799,400 (39,400/m ²)	
A3	1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34	1,339,6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206	8,116,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121	4,767,400 (39,400/m ²)	
	2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50	1,970,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303	11,938,200 (39,400/m ²)	
A4	1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401	15,799,400 (39,400/m ²)	
	2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63	2,482,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349	13,750,600 (39,400/m ²)	
	3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414	16,311,600 (39,400/m ²)	
	4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415	16,351,000 (39,400/m ²)	
	5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270	10,638,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120	4,728,000 (39,400/m ²)	
6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391	15,405,400 (39,400/m ²)		

붙임2

위치도 및 배치도

○ 위치도



○ 배치도



붙임3

참고자료

① 의료시설, 병원기숙사

○ 향후 現 적십자병원 건물 및 부지와 교환(향후 안건 상정) (단위 : m², 원)

획지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교환면적	기준가격	용도지역
의료시설용지				28,720	22,155		
B1	거창읍 대평리	1362-19	답	1,412	927	55,620,000 (60,000/m ²)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2-20	답	3,028	3,028	119,303,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21	답	1,871	1,871	73,717,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22	답	889	889	35,026,6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23	답	1,012	161	6,343,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29	답	1,203	921	36,287,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543-26	구	1,518	961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30	답	575	575	22,655,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31	답	1,405	1,405	55,357,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32	답	2,826	2,826	111,344,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33	답	932	932	36,720,8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34	답	691	169	6,658,6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60	도	110	98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61	도	535	505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62	도	360	208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63	도	188	5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64	도	157	6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8	답	1,234	681	40,860,000 (60,0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9	답	1,236	1,162	45,318,000 (39,0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10	답	1,045	992	38,688,000 (39,0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11	답	2,737	2,567	100,113,000 (39,000/m ²)		

획지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교환면적	기준가격	용도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2-12	답	1,131	1,078	42,042,000 (39,000/m ²)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2-14	답	2,625	158	6,162,000 (39,000/m ²)	
병원기숙사				4,165	2,343		
D2	거창읍 대평리	1362-14	답	2,625	2,045	79,755,000 (39,000/m ²)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2-15	답	1,540	298	11,741,200 (39,400/m ²)	

② 육아드림센터, 산후조리원(직접사용)

(단위 : m², 원)

획지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준가격	용도지역
육아드림센터 (아동관련시설)				9,747	2,800		
C1	거창읍 대평리	1362-34	답	691	365	14,381,000 (39,400/m ²)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2-35	답	1,898	1,898	74,781,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36	답	1,445	273	10,756,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543-26	구	1,518	119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63	도	188	79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23	답	1,012	20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24	답	2,995	46	1,812,400 (39,400/m ²)	
산후조리원				9,847	2,800		
D1	거창읍 대평리	1362-14	답	2,625	118	4,602,000 (39,000/m ²)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거창읍 대평리	1362-15	답	1,540	15	591,0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23	답	1,012	686	27,028,4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543-26	구	1,518	80	2025년 분할	
	거창읍 대평리	1362-24	답	2,995	1,803	71,038,200 (39,400/m ²)	
	거창읍 대평리	1362-64	도	157	98	2025년 분할	

붙임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3-	제출자	거창군수
----------	-------	-----	------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1. 제안이유

- 정부「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의료자원 부족 지역인 거창원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결정되었으나, 부지 확보 방안 등 미결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음
- 2023. 3. 3. 거창군-대한적십자사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을 위하여 거창군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현) 거창적십자병원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출산육아복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행복양육커뮤니티센터 등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 조성

2. 주요내용

가. 개요

- 위.....치 : 거창읍 대평리 일원
- 산.....청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2025. 12. (2년, 4개월)
- 산.....경.비 : 30,672백만원(용역비 1,800, 부지매입비 15,100, 공사비 13,772)
- 기.....확보 : 4,300백만원(용역비 1,300, 부지매입비 3,000) / 1차 추경
-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부지조성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개파/300병상/응급의료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차들실
 - 행복양육커뮤니티센터 건립 : 영아임신부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행복나눔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80필지, 96,638㎡(29,232필) / 붙임1 참조

다. 추진경과

- 2019. 11. 11. :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결정
- 2021. 7. 16.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 2022. 10. 4.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약체 회의(1차)
- 2022. 11. 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약체 회의(2차)
- 2023. 1. 13.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 2023. 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 2023. 4.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의결
- 2023. 4. : 제1차 추경예산 43억원 확보 /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일부)
- 2023. 5. ~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 기본계획 용역
- 2023. 6. 1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약체 회의(3차)
- 2023. 7. ~ 12.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손실보상 지원 용역 - 토지소유주 협의, 부지매각 등 의사 징구, 매매계약 체결 등

라. 향후계획

- 2023. 8.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3. 9. : 제2차 추경 부지매입비 추가 편성 및 토지 매입
- 2023. 9.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 2024.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24. 11. ~ 2025. 5. :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
- 2025. 6. ~ 12. : 부지조성공사 시행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국민 대상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기대
- 조속한 부지매입을 통해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성공적 사업추진 및 의료복지생태계의 등 인프라인 갖춤 쾌적한 시가지 조성 기반 마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2 참조

붙임1 취득재산 세부내역

□ 거창읍 대평리 1364-24일원 (80필지, 96,638㎡ / 29,232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공시지가	기준금액	비고
계	80필지		114,922	96,638	3,838,233,450		
1	거창읍 대평리 1364-24	답	2,208	2,208	35,100	77,500,800	
2	거창읍 대평리 1362-22	답	889	889	35,300	31,381,700	
3	거창읍 대평리 1362-33	답	932	932	35,300	32,899,600	
4	거창읍 대평리 1362-36	답	1,445	1,445	35,100	50,719,500	
5	거창읍 대평리 1364-27	답	1,772	1,772	35,100	62,197,200	
6	거창읍 대평리 1364-35	답	1,395	1,395	35,100	48,964,500	
7	거창읍 대평리 1362-28	답	211	211	51,400	10,845,400	
8	거창읍 대평리 1362-19	답	1,412	1,412	51,400	72,576,800	
9	거창읍 대평리 1370-8	답	1,636	1,636	35,100	57,423,600	
10	거창읍 대평리 1362-31	답	1,405	1,405	35,100	49,315,500	
11	거창읍 대평리 1364-17	답	2,066	2,066	35,100	72,516,600	
12	거창읍 대평리 1362-35	답	1,898	1,898	35,100	66,619,800	
13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2,069	35,100	72,621,900	
14	거창읍 대평리 1364-3	답	945	945	35,100	33,169,500	
15	거창읍 대평리 1370-20	답	1,307	1,307	45,900	59,991,300	
16	거창읍 대평리 1362-8	답	1,234	1,234	58,300	71,942,200	
17	거창읍 대평리 918-6	답	476	476	95,800	45,600,800	
18	거창읍 대평리 917-1	답	509	509	99,500	50,645,500	
19	거창읍 대평리 917-6	답	218	218	81,400	17,745,200	
20	거창읍 대평리 920-1	답	248	248	64,900	16,095,200	
21	거창읍 대평리 1362-11	답	2,737	2,737	35,100	96,068,700	
22	거창읍 대평리 1364-30	답	2,162	2,162	35,100	75,886,20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공시지가	기준금액	비고
23	거창읍 대평리 1362-30	답	575	575	35,100	20,182,500	
24	거창읍 대평리 1362-20	답	3,028	3,028	35,100	106,282,800	
25	거창읍 대평리 1362-15	답	1,540	1,540	35,100	54,054,000	
26	거창읍 대평리 1362-24	답	2,995	2,995	35,100	105,124,600	
27	거창읍 대평리 1370-22	답	1,176	1,176	45,900	53,978,400	
28	거창읍 대평리 1370-23	답	988	988	45,900	45,349,200	
29	거창읍 대평리 1362-23	답	1,012	1,012	35,300	35,723,600	
30	거창읍 대평리 1362-34	답	691	691	35,300	24,392,300	
31	거창읍 대평리 1362-9	답	1,236	1,236	35,100	43,383,600	
32	거창읍 대평리 1362-12	답	1,131	1,131	35,100	39,698,100	
33	거창읍 대평리 1362-29	답	1,203	1,203	35,100	42,225,300	
34	거창읍 대평리 1362-10	답	1,045	1,045	35,100	36,679,500	
35	거창읍 대평리 1363-2	답	1,788	1,788	35,100	62,758,800	
36	거창읍 대평리 1364	답	985	985	35,100	34,573,500	
37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1,461	51,400	75,095,400	
38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331	35,100	11,618,100	
39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331	33,700	11,154,700	
40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608	33,700	20,489,600	
41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2,172	35,100	76,237,200	
42	거창읍 대평리 1364-25	답	988	988	35,100	34,678,800	
43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2,046	35,100	71,814,600	
44	거창읍 대평리 1364-26	답	1,223	1,223	35,100	42,927,300	
45	거창읍 대평리 1370-21	답	972	972	45,900	44,614,800	
46	거창읍 대평리 1364-29	답	585	585	35,100	20,533,500	
47	거창읍 대평리 1364-21	답	2,261	2,261	51,400	116,215,400	
48	거창읍 대평리 1364-32	답	205	205	35,100	7,195,500	
49	거창읍 대평리 1364-33	답	760	760	33,700	25,612,000	
50	거창읍 대평리 1364-34	답	638	638	35,100	22,393,800	
51	거창읍 대평리 1370-6	답	1,031	1,031	35,100	36,188,10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공시지가	기준금액	비고
52	거창읍 대평리 1370-7	답	1,412	1,412	35,100	49,561,200	
53	거창읍 대평리 1364-4	답	1,950	1,950	35,100	68,445,000	
54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959	35,100	33,660,900	
55	거창읍 대평리 1364-6	답	1,921	1,921	35,100	67,427,100	
56	거창읍 대평리 1362-32	답	2,826	2,826	35,100	99,192,600	
57	거창읍 대평리 1364-23	답	744	744	35,100	26,114,400	
58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1,722	35,100	60,442,200	
59	거창읍 대평리 1370-19	답	678	678	35,100	23,797,800	
60	거창읍 대평리 1362-21	답	1,871	1,871	35,100	65,672,100	
61	거창읍 대평리 1316-4	답	195	195	102,300	19,948,500	
62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1,008	35,100	35,380,800	
63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1,012	35,100	35,521,200	
64	거창읍 대평리 1324-1	답	7	7	91,900	643,300	
65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1,581	51,400	81,263,400	
66	거창읍 대평리 918-2	답	2,124	2,124	116,300	247,021,200	
67	거창읍 대평리 1362-14	답	2,625	2,625	35,100	92,137,500	
68	거창읍 대평리 1364-22	답	1,983	1,983	38,400	76,147,200	
69	거창읍 대평리 920-3	답	1,474	1,474	84,900	125,142,600	
70	거창읍 대평리 919-3	답	949	949	84,900	80,570,100	
71	거창읍 대평리 543-2	구거	17,719	2,699	5,850	15,789,150	
72	거창읍 대평리 1362-42	도로	620	109	11,200	1,220,800	
73	거창읍 대평리 1362-43	도로	559	545	11,200	6,104,000	
74	거창읍 대평리 1362-44	도로	390	374	11,200	4,188,800	
75	거창읍 대평리 1362-45	도로	321	232	11,200	2,598,400	
76	거창읍 대평리 1362-46	도로	473	163	11,200	1,825,600	
77	거창읍 대평리 1362-51	도로	983	544	11,200	6,092,800	
78	거창읍 대평리 1362-52	도로	615	293	11,200	3,281,600	
79	거창읍 대평리 1362-53	도로	985	447	11,200	5,006,400	
80	거창읍 대평리 1482-21	구거	1,137	12	11,200	134,400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 9. 12.)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 - 106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9. 12.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1. 제안이유

- 출산·육아·복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센터 등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 조성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일원
- 사 업 명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2025. 12. (2년 4개월)
- 사 업 비 : 30,672백만원
 - 용역비 1,800, 부지매입비 15,100, 공사비 13,772
 - 기확보 4,300백만원(용역비 1,300, 부지매입비 3,000)

- 18 -

-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부지조성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개과/300병상/응급의료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선
 -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건립 : 영아·임산부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행복나눔과) : 육아정보나눔터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80필지, 96,638㎡(29,232평)

다. 추진경과

- 2019. 11. 11. :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결정
- 2021. 7. 16.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 2022. 10. 4.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약에 화해
- 2022. 11. 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약에 화해
- 2023. 1. 13.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 2023. 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 2023. 4.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리안 의결
- 2023. 4. : 제1회 추경예산 43억원 확보
- 2023. 5.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 기본계획 용역
- 2023. 6. 1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약에 화해
- 2023. 7. 12.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손실보상 지원 용역

라. 향후계획

- 2023. 8.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3. 9. : 제2차 추경 부지매입비 추가 편성 및 토지 매입
- 2023. 9.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 2024.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24. 11. - 2025. 5. :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
- 2025. 6. - 12. : 부지조성공사 시행 및 준공

- 19 -

마. 기대효과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군민 대상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기대
- 의료·복지·생활편의 등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시가지 조성 기반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예진]

-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 책임의료 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 이권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시급한 응급의료 확충과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026 - 35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②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 매입	담당부서	산림과
-----------------------------	-------------	------------

1. 제안이유

- 대성중학교 배후부지 공원 조성을 통한 학생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 2025. 7월 군민 행복토크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소유자(도향교재단)의 매각 승인에 따른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 2) 사 업 비 : 735백만원(군비) ※ [붙임1] 참조/ 감정평가결과 반영
- 3) 사업기간 : 2026. 3. ~ 7.
- 4) 주요내용 : 토지 협의 매입(거창읍 가지리 산94-6번지, 면적 4,126㎡)
 - 기존 수림 최대 보존하는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
 - 학생 야외학습장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 산책로 및 건강증진시설 설치로 휴식·여가공간 제공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4,126	4,126	259,938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산94-6번지	임	4,126	4,126	259,938	2026. 4.	공원 조성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공시지가 63,000원 /㎡

라. 추진경과

- 1) 2025. 7. 16. : 군민 행복토크 건의(대성중~향교 보도블럭 설치 요청)
- 2) 2025. 9. 25. : 도 향교재단 토지 매입 재추진 계획 보고
- 3) 2025. 10. 14. : 감정평가 실시
- 4) 2025. 10. 22. : 토지 매입 보상협의 요청
- 5) 2025. 11. 12. : 도 향교재단 이사회 매각 승인

마. 향후계획

- 1) 2026. 3.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확보
- 2) 2026. 4. ~ 5.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바. 기대효과

- 1) 도심 내 자연 친화형 공공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여
- 2) 주민 교류 활성화 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 소통 및 유대감 강화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붙임1**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735	
부지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 735백만원 - 대상지 : 거창읍 가지리 산94-6번지(4,126㎡) - 소유자 : 재단법인경상남도향교재단 - 감정평가 결과 (가격시점 : 2025.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A감정평가 : 722백만원 2) B감정평가 : 747백만원 	735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위치도

매입대상지 : 가지리 산 94-6번지(임)(면적 4,126㎡)



현장사진

거창읍 가지리 산 94-6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안 번호	2026 - 3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2026. 1. 1. 현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나. 대상면적 : 32.20km²

다. 읍면별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면 적(m ²)	도 시 지 역
합 계	32,200,603	거창읍, 웅양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 일부 지역
거창읍	26,767,975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 지역
웅양면	2,773,000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 지역
마리면	455,000	영승리, 하고리 일부 지역
남상면	1,310,893	대산리·월평리 일부 지역
가조면	893,735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 지역

라. 고시면적 변경 내역

금회 고시면적 (2026. 1. 1. 기준)	종전 고시면적 (거창군 고시 제2024-59호)	증감 면적
32,200,603m ²	32,210,186m ²	(감) 9,583m ²

마. 고시면적 변경 사유

변경지역	계	증감면적		증 감 사 유
남상면	(감) 9,583	(증) 78	(감) 9,661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5-38호(2025.04.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 지방세법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거창군 군세 조례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의안 번호	2026 - 3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주택·건물·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주민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1) 사업명 :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2) 위치 : 거창군 전 읍·면
- 3) 사업비 : 약 3,159백만원(국 1,006 / 군 1,621 / 자부담 532) ※ 변동 가능
- 4) 사업내용 : 주택·건물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태양광·태양열 등 설비 설치 지원
- 5) 추진방법 : 참여기업(민간) 대행사업(지자체+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나. 공모 개요

- 1) 신청기간 : 2026. 3. ~ 6.(예정)
- 2)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3) 선정시기 : 2026. 10. ~ 11.월 중 최종 확정(예정)
- 4) 선정규모 : 등급별(A~E)선정 및 국비 차등 지원
- 5) 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3. 추진계획

- | | |
|------------------------------|------------------|
| 가. 참여기업 공개모집 및 선정 | : 2026. 3. ~ 4 |
| 나. 사업대상 수요조사(읍·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 2026. 4. ~ 5. |
| 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신청 및 공개평가 | : 2026. 6. ~ 7. |
| 라. 심층평가(현장·서류) 공모사업 선정 | : 2026. 8. ~ 11. |
| 마.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 : 2027. 1. ~ 12. |

4. 붙임자료

- 가.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 나. 그간 추진현황(2013~2026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거창군 전 읍·면 대상
- 사업량 : 433개소【태양광 352개소 1,273kW/ 태양열 81개소 486㎡】
- 사업비 : 3,043백만원【국비 706(23%)/ 군비 1,824(60%)/ 자부담 513(17%)】
- 사업기간 : 2026. 1. ~ 12.
- 참여기업 : (주)와이에스피(태양광) 외 3개 기업
 - 극동에너지(주): 태양열/ (주)더키: 모니터링/ 이수이엔지(주): 설계감리

□ 그간 추진사항

- 공모사업 신청 및 최종 선정 발표 : 2025. 6. 5./ 2025. 11. 13.
-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참여기업↔군↔에너지공단) : 2026. 1. 27.
- 사업대상지 현장 실사 및 사업 추진 : 2026. 2 ~ 2026. 12.

□ 향후계획

- 국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선급금 지급 : 2026. 3월 중
- 사업 착수 및 준공 : 2026. 3. ~ 2026. 11.
- 설치 확인 및 정산 : 2026. 12.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에너지원	형식 (용량)	개소	사업용량	계	국	군	자부담
태양광	주택 (2~3kW)	298	894kW	1,338,318	360,280	680,038	298,000
	건물 (100kW 이하)	41	261kW	376,101	78,300	209,578	88,223
	축사 (100kW 이하)	13	118kW	148,090	36,580	75,662	35,848
태양열	주택 (6㎡)	73	438㎡	500,196	62,780	357,116	80,300
	건물 (6㎡)	8	48㎡	55,912	7,190	41,022	7,700

모니터링 (신규)	RTU 비용	433	개소	194,850	97,420	97,430	-
	태양열 열량계 비용	81	개소	24,300	12,150	12,150	-
모니터링(유지관리)		433	개소	21,650	10,820	10,830	-
설계비 기준 (신재생사업비+모니터링비 3%이내)		-	-	79,780	39,890	39,890	-
부가가치세		-	-	-	-	273,919.7	-
기타사업				30,117	-	27,379	2,738
합 계(천원)				3,043,233.7	705,410	1,825,014.7	512,809

□ 에너지원별 자부담 금액

에너지원	구분	개소수	총 사업비	국비	군비	자부담
태양광(3kW)	주택	298	4,491,000원	1,209,000원	2,282,000원	1,000,000원
태양광(3kW)	건물	31	4,323,000원	900,000원	2,323,000원	1,110,000원
태양광(3kW)	축사	6	3,765,000원	930,000원	1,835,000원	1,000,000원
태양광(3kW)	공공	1	4,323,000원	900,000원	3,423,000원	0원
태양광(5kW)	건물	4	7,205,000원	1,500,000원	3,930,000원	1,775,000원
태양광(6kW)	공공	1	8,646,000원	1,800,000원	6,846,000원	0원
태양광(10kW)	건물	2	14,410,000원	3,000,000원	7,952,000원	3,458,000원
태양광(10kW)	축사	3	12,550,000원	3,100,000원	6,490,000원	2,960,000원
태양광(16kW)	축사	2	20,080,000원	4,960,000원	10,201,000원	4,919,000원
태양광(19kW)	건물	1	27,379,000원	5,700,000원	15,219,000원	6,460,000원
태양광(19kW)	축사	2	23,845,000원	5,890,000원	12,390,000원	5,565,000원
태양광(100kW)	건물	1	144,100,000원	30,000,000원	80,453,000원	33,647,000원
태양열(6㎡)	주택	73	6,852,000원	860,000원	4,892,000원	1,100,000원
태양열(6㎡)	건물	7	6,989,000원	899,000원	4,990,000원	1,100,000원
태양열(6㎡)	공공	1	6,989,000원	899,000원	6,090,000원	0원

구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내 용	비고
2013년	신원면 신기산촌생태마을	50개소	798	태양광+ 태양열+ 지열 (자부담 없음)	완료
2014년	거창읍 성산, 송정 / 신원면 청연	77개소	888	태양광+ 태양열+ 하이브리드가로등	완료
2015년	위천면 일원 장기, 창촌, 사마, 거차	86개소	597	태양광+ 태양열	완료
2018년	신원면 일원 과정 등 8개 마을	159개소	1,013	태양광+ 태양열	완료
2019년	남상면·신원면 일원 21개 마을	270개소	1,698	태양광+ 태양열	완료
2020년	가조면·위천면·신원면 일원 24개 마을	296개소	1,836	태양광+ 태양열+ 지열	완료
2021년	거창읍·가조면 일원 28개 마을	244개소	1,972	태양광+ 태양열+ 주민수익형	완료
2022년	거창읍·남하·가조·가북면 일원 28개 마을	285개소	2,256	태양광+ 태양열+ 지열+ 군자체사업	완료
2023년	주상·웅양·고제·북상·위천· 마리면 일원 60개 마을	406개소	3,110	태양광+ 태양열+ 주민수익형	완료
2025년	거창군 전역	488개소	4,466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민수익형	완료
2026년	거창군 전역	433개소	3,043	태양광+ 태양열+ 주민수익형	진행중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수탁 협약 체결)

의안 번호	2026 - 3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배 경

- 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수립(2023년), 우리군 참여 사업으로 지리산권 2개 사업 선정
※ 지리산권 6개군 공동사업 (경남)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전남) 구례
- 나. 2025년 6개군 공동으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완료, 올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 조직 필요성 대두

2. 개 요

- 가. 협 약 명 :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
- 나. 협약기관 : 경상남도, 지리산권 6개군, 경남관광재단
- 다. 위탁사무 ㄱ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라. 수 탁 자 : 경남관광재단
- 마. 기 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위탁사무의 종료일까지
- 비. 위탁예산 : 214백만원(국 107, 도 32.1, 군 74.9)

3. 사업 세부내용

- 가.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1) ESG가치여행 완주 인증 및 보상제도 운영
 - 2) 지자체 개별 및 연계 관광상품 운영, 미션투어 개발
 - 3) 성과관리 모니터링, 인건비 등
- 나.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1)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여행상품 운영 등)
 - 2) 지리산권 연합 팝업스토어 추진, 통합 홍보
 -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4. 그간 추진사항

- 가. 2025. 4. :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 착수보고회
- 나. 2025. 5. ~ 10. : 중간보고회, 경남도 및 지자체⇔용역사 회의 등
- 다. 2025. 11. :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
- 라. 2025. 11. : 웰니스 및 워케이션 팸투어 운영
- 마. 2026. 1. 13. : 거창군의회 사전 보고
- 바. 2026. 2. 24. : 협약 체결 완료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타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 협약 체결 후 동의 절차 추진

5. 향후계획

- 가. 2026. 3. : 경남관광재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나. 2026. 4.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경상남도, 6개 지자체)
- 다. 2026. 4. ~ : 사업비 교부, 지리산권 사업 추진

6. 기대효과

- 가. 지리산권 광역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 6개 군 공동 상품과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인 지리산권 인식 효과 기대
- 나. ESG 가치여행 및 웰니스 특화로 체류·소비 확대
 - 완주 인증제,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
- 다.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 실행력 확보
 - 경남관광재단 중심의 통합 기획·운영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성과 관리 체계화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 진주시·의령군·함안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하 ‘시군’ 라 한다)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남부권광역관광 진흥사업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와 시군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을 재단에 위탁·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사무) ① 도와 시군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으로 아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진주시, 의령·함안군)
2.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3.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② 재단은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있어 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에 정한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정부정책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와 재단이 협의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① 도와 시군은 재단에 해당 사업계획을 확정·통보하며 재단은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시군은 재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재난, 기타 도가 인정하는 사유 발생으로 제4조 제1항의 사업계획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등) ① 도와 시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으로 인한 대행수수료는 사업비의 4.5%로 한다. 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교부신청 및 사용은 「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재단은 관계 법령 및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도의 지시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와 시군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재단에 위탁한 사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와 시군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단은 도와 시군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사) ① 도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회계처리 등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있을 경우 재단에게 시정조치 및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고, 재단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도는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재단의 조치가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단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재단은 시정명령 후 20일 이내 이행결과를 도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거나, 해당 사무처리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7일 이내 소명할 수 있고, 도는 그 소명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도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고, 2회 이상 미이행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도와 시군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재단이 부담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은 기간 만료 전에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은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3. 기타 재단의 중대한 하자 사유로 도가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 시군과 재단의 협의에 의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와 시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도, 시군과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 시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10부 작성하여 도, 시군과 재단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2. .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진주시장 조규일 (인)

의령군수 오태완 (인) 함안군수 조근제 (인)

하동군수 하승철 (인) 산청군수 이승화 (인)

함양군수 진병영 (인) 거창군수 구인모 (인)

합천군수 김윤철 (인) (재)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배종천 (인)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안 번호	2026 - 3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추진배경

- 가. 『2026 거창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달성
- 나. 인구감소지역 관광 유도 및 국내 여행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한 관광 생활인구 확대

2.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 나. 사업기간 : 2026. 4. ~ 12.
- 다. 사업비 : 10억 원(국비 3억 원, 군비 7억 원)
- 라. 사업내용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들의 여행 관련 지출금액의 반값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재방문 및 지역 소비 유도 (개인 최대 10만원, 단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3. 공모개요

- 가. 공모대상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기초 지자체
- 나. 선정규모 : 20개 기초 지자체 이내
- 다. 선정절차
 - 1) (1차) 서면평가 : 2026. 2. 10.(화) * 결과발표 : 2. 11.(수)
 - 2) (2차) 발표평가 : 2026. 2. 23.(월) ~ 2. 24.(화)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 3) 최종결과 : 선정 * 결과발표 : 2. 26.(목)
- 라. 선정조건
 - 1) 지자체 매칭비 7억 원 확보 및 협약 필수
 - 2) 지자체 사업근거 및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완비 상태 등

4. 기대효과

- 『2026 거창방문의 해』 핵심사업으로 연계하여 거창 관광 이미지 제고

거창군 미집행 준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2026 - 4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 미집행 준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관련 의견을 듣고 향후 집행예산 편성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

2. 법적근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보고 의무,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 「도시·준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12. 26.)

다. 「도시·준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개정

(국토교통부, 2018. 3. 14.)

3.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절차에 관한 내용

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나. 해제권고 받은 시설은 1년 이내 도시·준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고 후 6개월 이내 소명



4. 보고사항

가.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

- 1)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군계획시설을 말함

나. 집행계획의 보고 및 권고 등

- 1)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
- 2)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 해제 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
- 3)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 4)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다. 단계별 집행계획

- 1) 계획의 범위: 거창군 행정구역 내 미집행 군계획시설
- 2)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구 분	전 체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소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089	31,554,438	822	13,597,653	240	9,954,824	16	85,714	224	9,869,110
도로	621	16,368,316	586	16,214,538	29	153,778	15	57,844	14	95,934
궤도	1	27,870	-	-	1	27,870	1	27,870	-	-
주차장	23	74,027	23	74,027	-	-	-	-	-	-
공원	28	439,676	25	353,985	3	85,691	-	-	3	85,691
광장	15	597,303	15	597,303	-	-	-	-	-	-
녹지	27	141,110	26	136,168	1	4,942	-	-	1	4,942
하천	208	9,792,311	2	109,768	206	9,682,543	-	-	206	9,682,543
기타	166	4,113,826	166	4,113,826	-	-	-	-	-	-

3)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총괄

- 미집행시설중 궤도 1개소, 녹지1개소는 집행가능성이 낮아 해제 필요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 원)	2025~2027년			2027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 원)
합 계	240	9,922,012	591,882	22	259,102	78,688	216	9,662,910	513,194
도 로	29	153,778	52,031	19	131,222	42,710	10	22,556	9,321
공 원	3	85,691	8,998	1	80,290	8,430	2	5,401	567
하 천	206	9,682,543	530,853	2	47,590	27,548	204	9,634,953	503,305

※ 해제 면적 : 궤도 1개소(27,870㎡) + 녹지 1개소(4,942㎡) = 32,812㎡

5. 향후 추진계획

가. 2026. 3. :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나. 2026. 4. :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2026 - 4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22년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시간” 및 “군수 읍면순방”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건의를 수용하여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함
- 나.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음
- 다.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전역(농업진흥지역 63km² 중점)
- 2) 대 상
 - 농업진흥지역 해제(65개소 1,066필지)
 - 용도지역 변경(51개소 871필지)
- 3) 기 간 : 2023. 11. ~ 2026. 11.
- 4) 사 업 비 : 319백만원
- 5) 내 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나. 대상지 내역

- 1) 농업진흥지역 해제 : 거창군 전역 65개소 632,801m²
- 2) 용도지역 변경 : 거창군 전역 51개소 492,236m²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개소 44,117m²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33개소 219,353m²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2개소 24,414m²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14개소 204,352m²

3. 그간 추진사항

- 가. 2023. 10. :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 착수
- 나. 2023. 11. ~ 2025. 12.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계획 수립
- 다. 2026. 1.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 작성
- 라. 2026. 2. : 경상남도 사전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4. 향후계획

- 가. 2026. 3.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의회의견청취
- 나. 2026. 4. : 군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자문
- 다. 2026. 5. :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
- 라. 2026. 6. ~ 8. : 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마. 2026. 9.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참고사항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붙임 1
- 나.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세부내역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1. 계획의 목적

- 가.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용도지역을 재검토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현실화 도모
- 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2. 계획의 기준

- 가. 소규모(3만㎡ 이하) 블록의 지역 여건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2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수립
 -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접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적선 및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선형 등을 기준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계획의 명확성을 확보함

구 분	유 형	대상지 선정기준
유형1	소규모 단절토지	• 도로, 철도, 하천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3만제곱미터 이하)
유형2	농지전용협의 완료된 지역	• 실시계획 인가 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조성 완료된 군계획시설 내 농업진흥지역 • 농지전용협의를 수반하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유형3	농업진흥지역 내 대지 등	•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이 입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블록의 세 면 이상이 농지와 접하지 아니하고 해제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지역
유형4	잔여지	• 농업진흥지역의 축이 단절된 농업진흥지역 잔여지
기 타	용도지역 변경	• 그 외 농림지역의 지정목적 상실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검토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0		804,144,882.0	100.0	
주거 지역	소 계	4,939,081.0		4,939,081.0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0		1,462,455.0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3,164,491.0		3,164,491.0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0		196,057.0	0.0	
	준주거지역	116,078.0		116,078.0	0.0	
상업 지역	소 계	347,740.0		347,740.0	0.0	
	일반상업지역	347,740.0		347,740.0	0.0	
공업 지역	소 계	1,565,584.0		1,565,584.0	0.2	
	일반공업지역	1,537,142.0		1,537,142.0	0.2	
	준공업지역	28,442.0		28,442.0	0.0	
녹지 지역	소 계	25,348,198.0		25,348,198.0	3.2	
	보전녹지지역	1,654,760.0		1,654,760.0	0.2	
	생산녹지지역	7,651,048.0	감) 44,117.0	7,606,931.0	0.9	
	자연녹지지역	16,042,390.0	증) 44,117.0	16,086,507.0	2.0	
관리 지역	소 계	263,568,581.4	증) 448,119.0	264,016,700.4	32.8	
	보전관리지역	173,184,638.0	증) 204,352.0	173,388,990.0	21.6	
	생산관리지역	8,356,452.0	증) 24,414.0	8,380,866.0	1.0	
	계획관리지역	82,027,491.4	증) 219,353.0	82,246,844.4	10.2	
농림지역		467,671,402.6	감) 448,119.0	467,223,283.6	58.1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0		40,704,295.0	5.1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6-00호(2026.02.0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면적을 반영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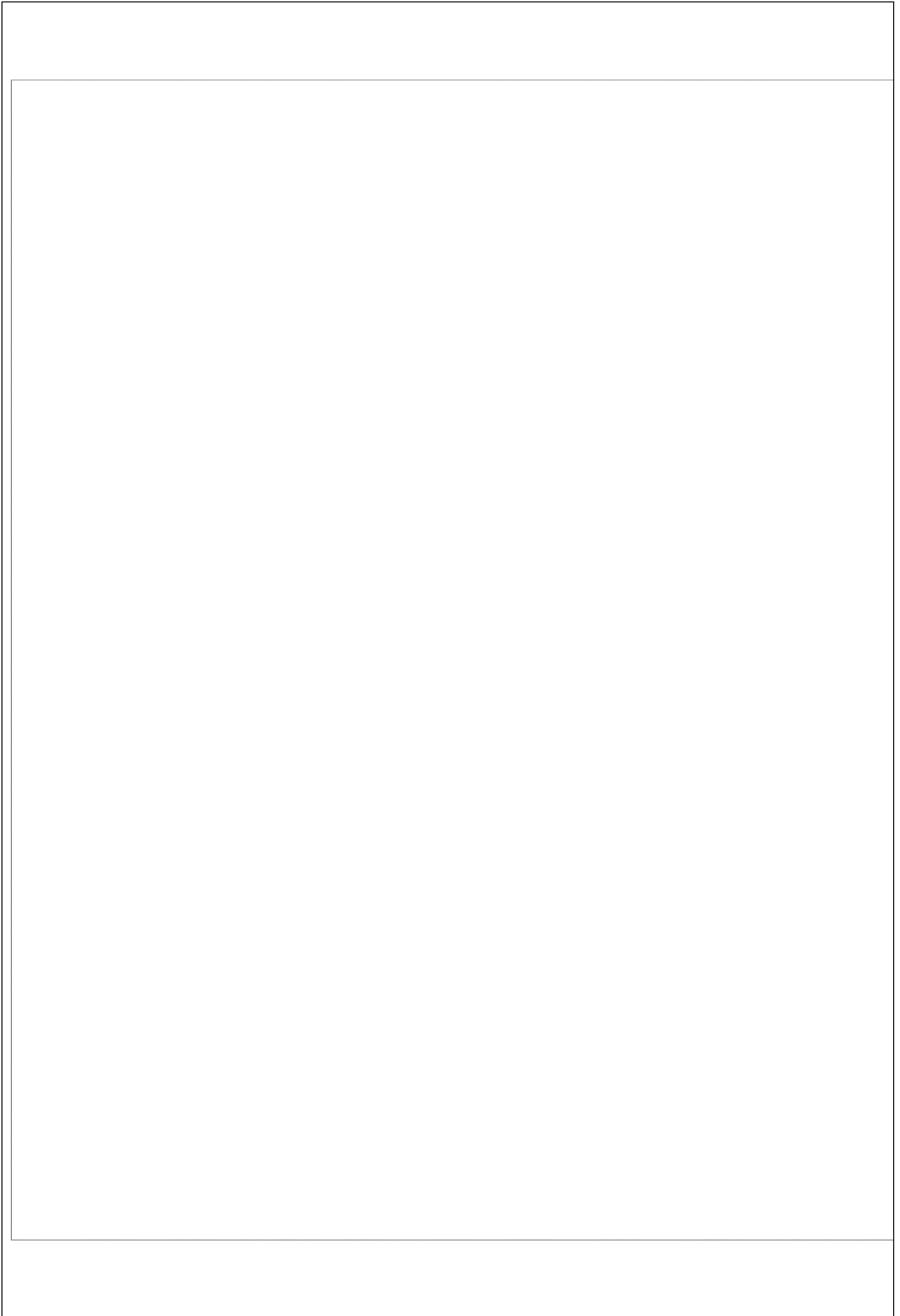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소계		492,236		
거창읍 대평리 810-8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7,402	100%	• 농지전용협의 완료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2)
거창읍 정장리 1023-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5,504	10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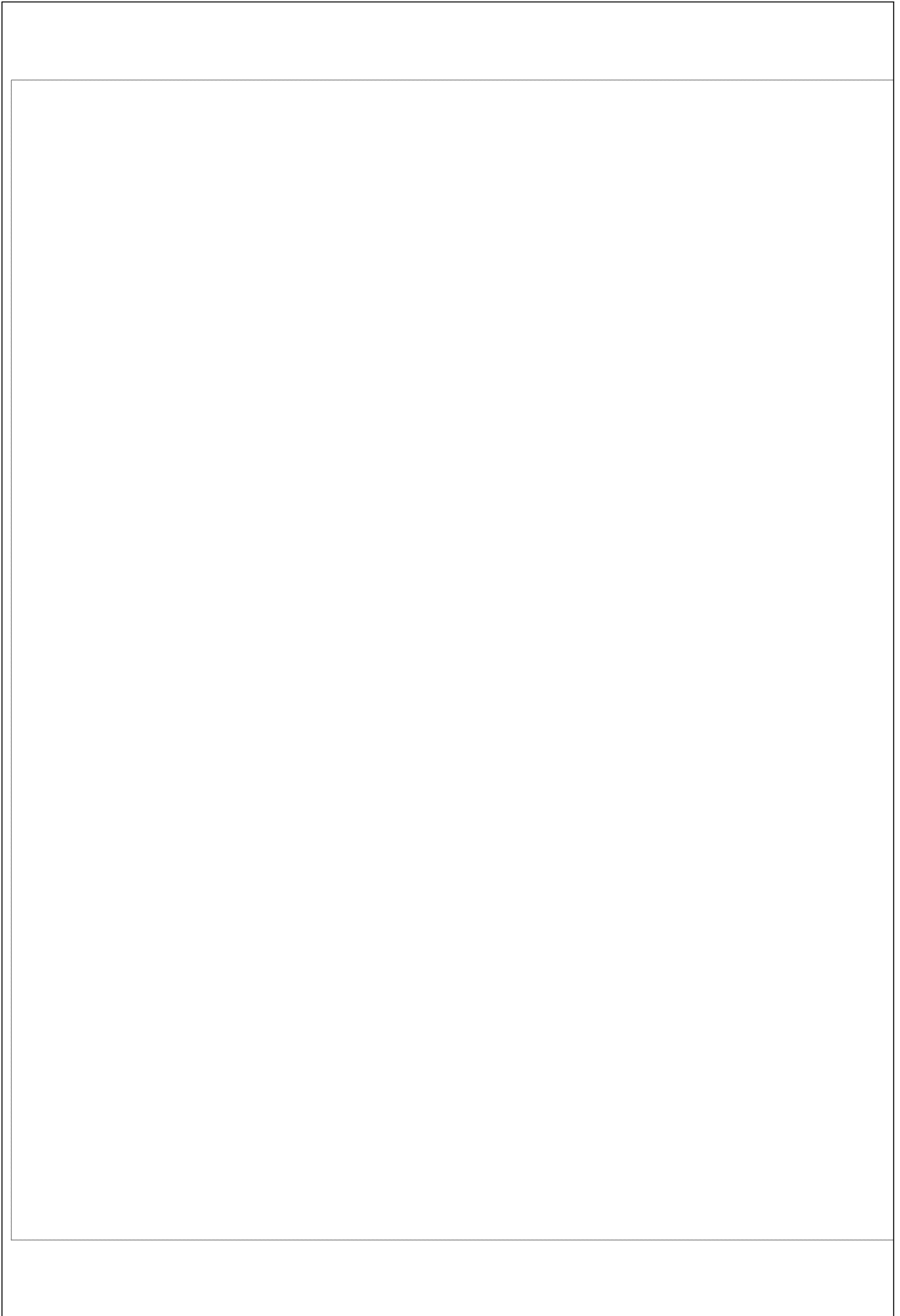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거창읍 정장리 1022-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010	10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거창읍 학리 189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560	100%	• 농업진흥지역 밖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연접한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기타)
거창읍 송정리 63-2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26,715	10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거창읍 학리 66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087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거창읍 학리 90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122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거창읍 동변리 664-3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4,830	8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주상면 도평리 376-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9,398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주상면 성기리 209-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2,554	8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주상면 성기리 74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75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주상면 도평리 381-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177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주상면 남산리 523-7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935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웅양면 산포리 1044-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5,572	8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웅양면 죽림리 1-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34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웅양면 산포리 105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6,036	8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웅양면 산포리 1009-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21,018	8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위천면 남산리 30-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866	10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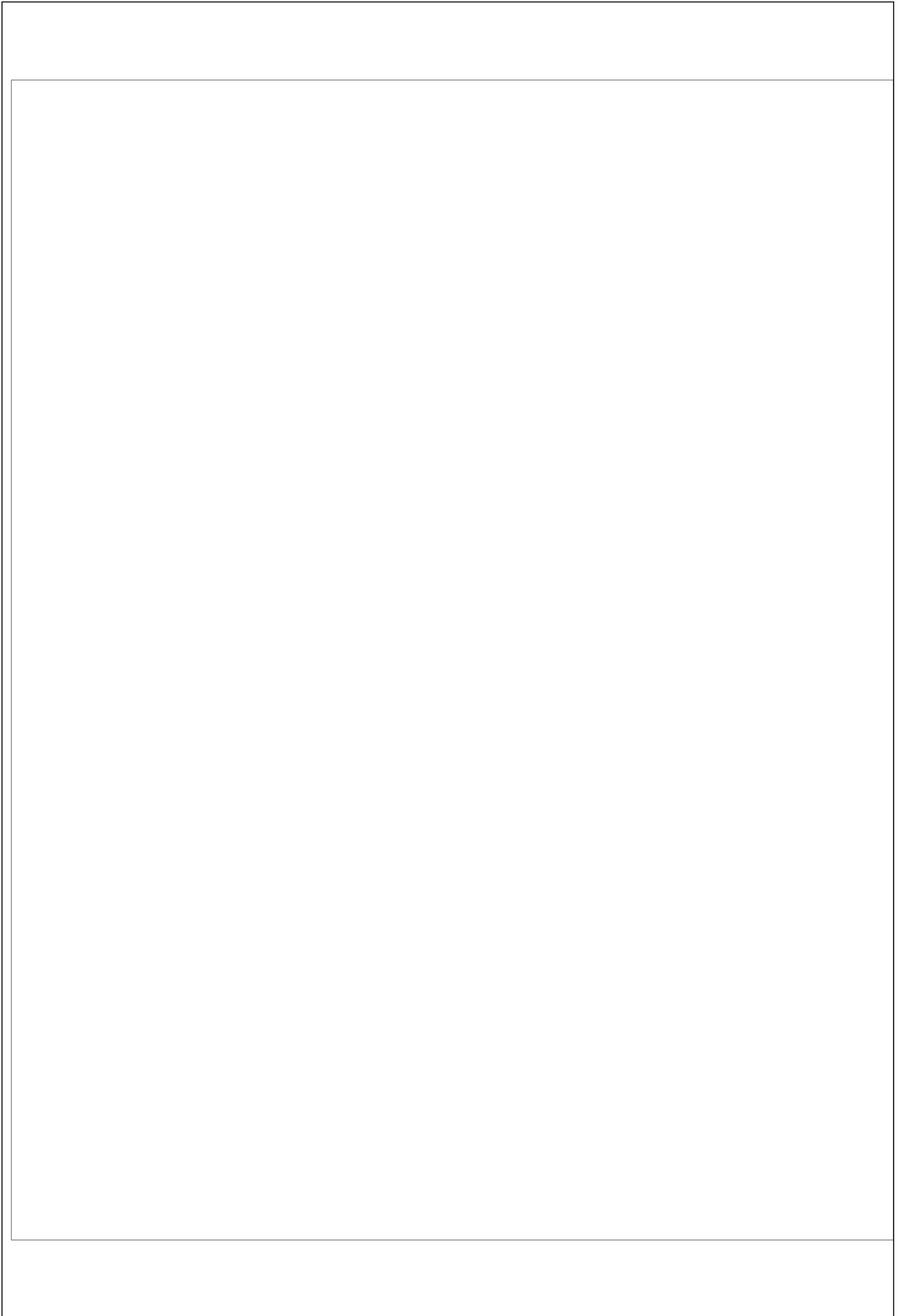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위천면 당산리 36-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9,808	10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위천면 상천리 1108-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20,108	80%	•주변 농지와 단절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4)
위천면 상천리 1127-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8,563	80%	•주변 농지와 단절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4)
위천면 모동리 40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40	10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위천면 상천리 568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6,595	8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마리면 말흘리 218-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021	100%	•농지전용협의 완료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2)
마리면 말흘리 336-10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09	10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마리면 영승리 560-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23,001	8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남상면 무촌리 1401-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429	10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남상면 무촌리 1176-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998	10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남상면 월평리 1262-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614	10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남상면 무촌리 230-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80	10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남상면 대산리 1337-2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4,528	8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남하면 무릉리 287-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4,567	100%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남하면 둔마리 127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0,356	10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남하면 양항리 1044-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32,852	80%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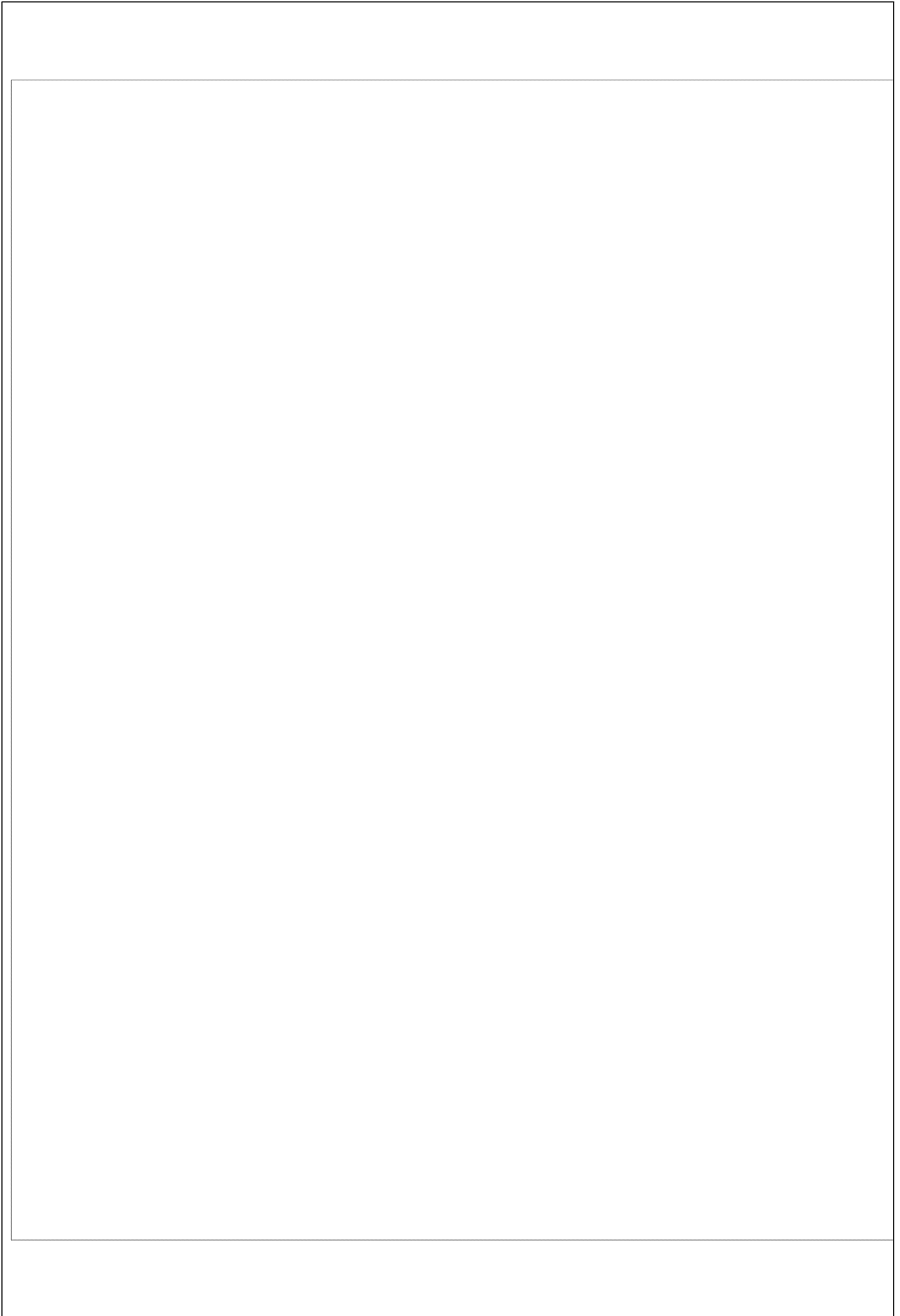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남하면 양항리 1031-7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22,698	8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남하면 양항리 615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4,483	8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신원면 구사리 1079-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369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신원면 양지리 828-8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356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조면 기리 74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8,611	10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가조면 일부리 685-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9,582	100%	• 농지전용협의 완료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2)
가조면 일부리 158-6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91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조면 일부리 755-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324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조면 수월리 374-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736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조면 수월리 739-2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008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조면 사병리 1171-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426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북면 용암리 1910-2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3,396	8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북면 우혜리 1700-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425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북면 박암리 930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0,469	8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가북면 몽석리 1743-6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448	100%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유형3)
가북면 용산리 8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7,687	100%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분리된 소규모 단절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유형1)
가북면 용암리 산 62-19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2,063	80%	• 농업진흥지역 밖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연접한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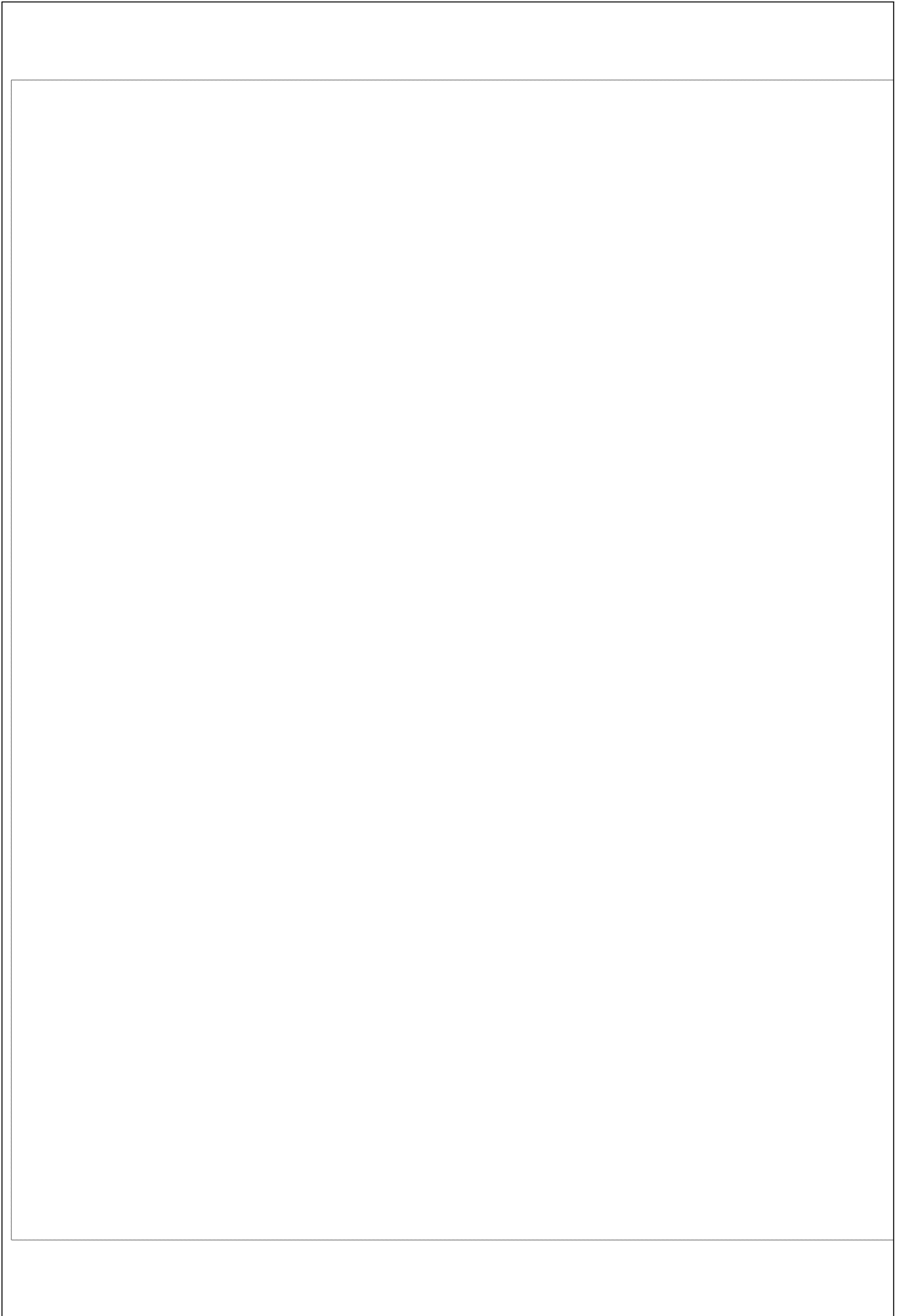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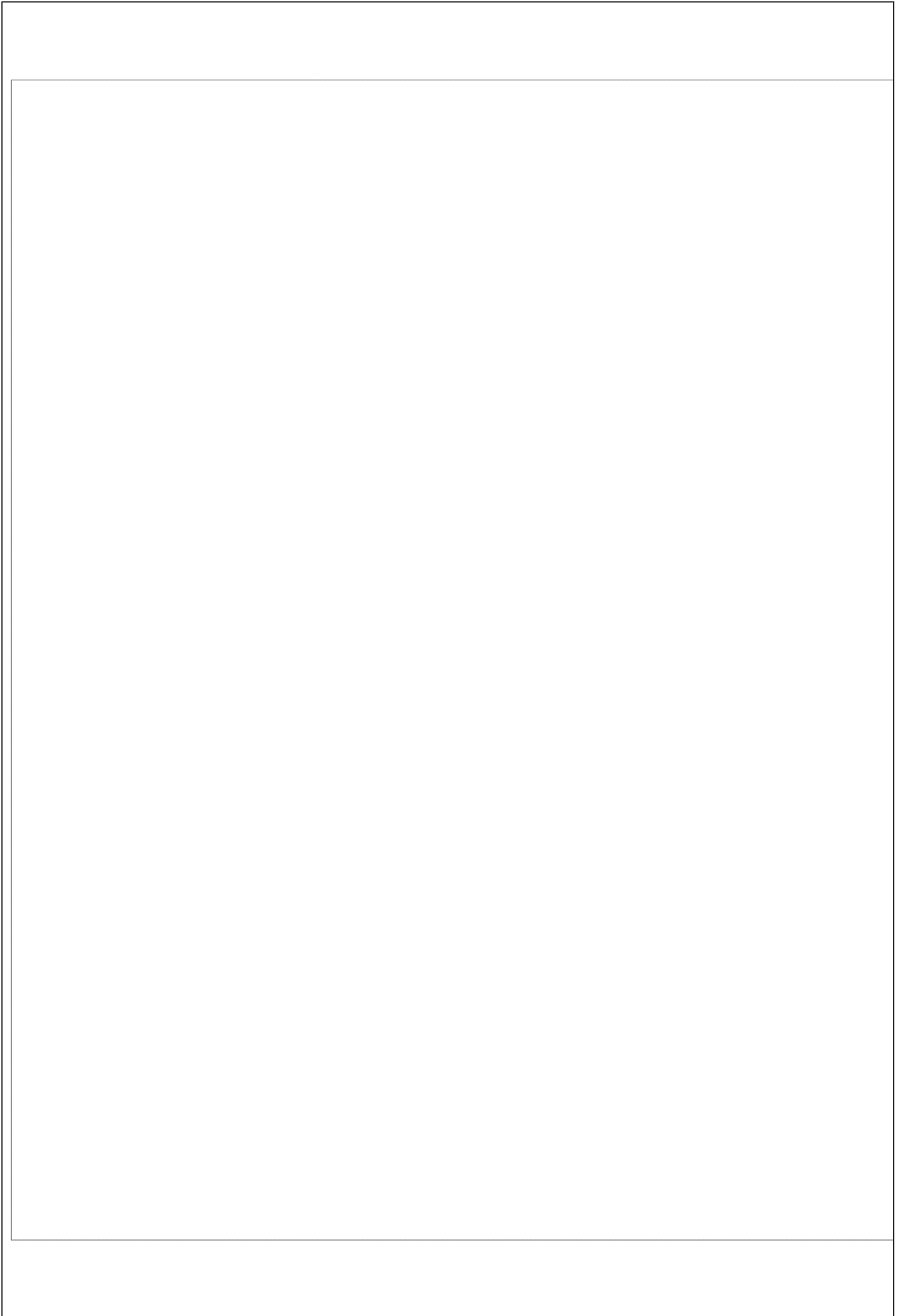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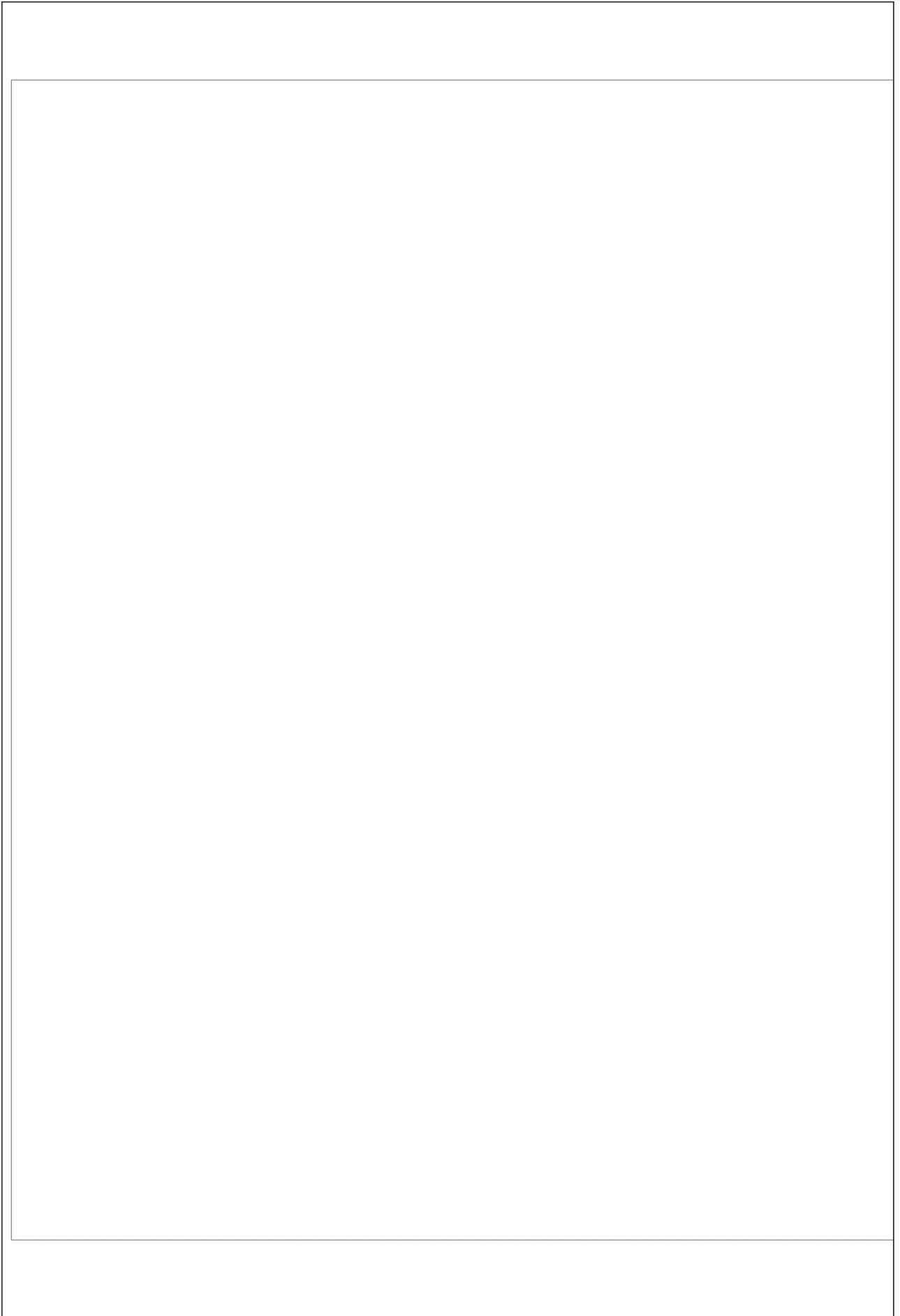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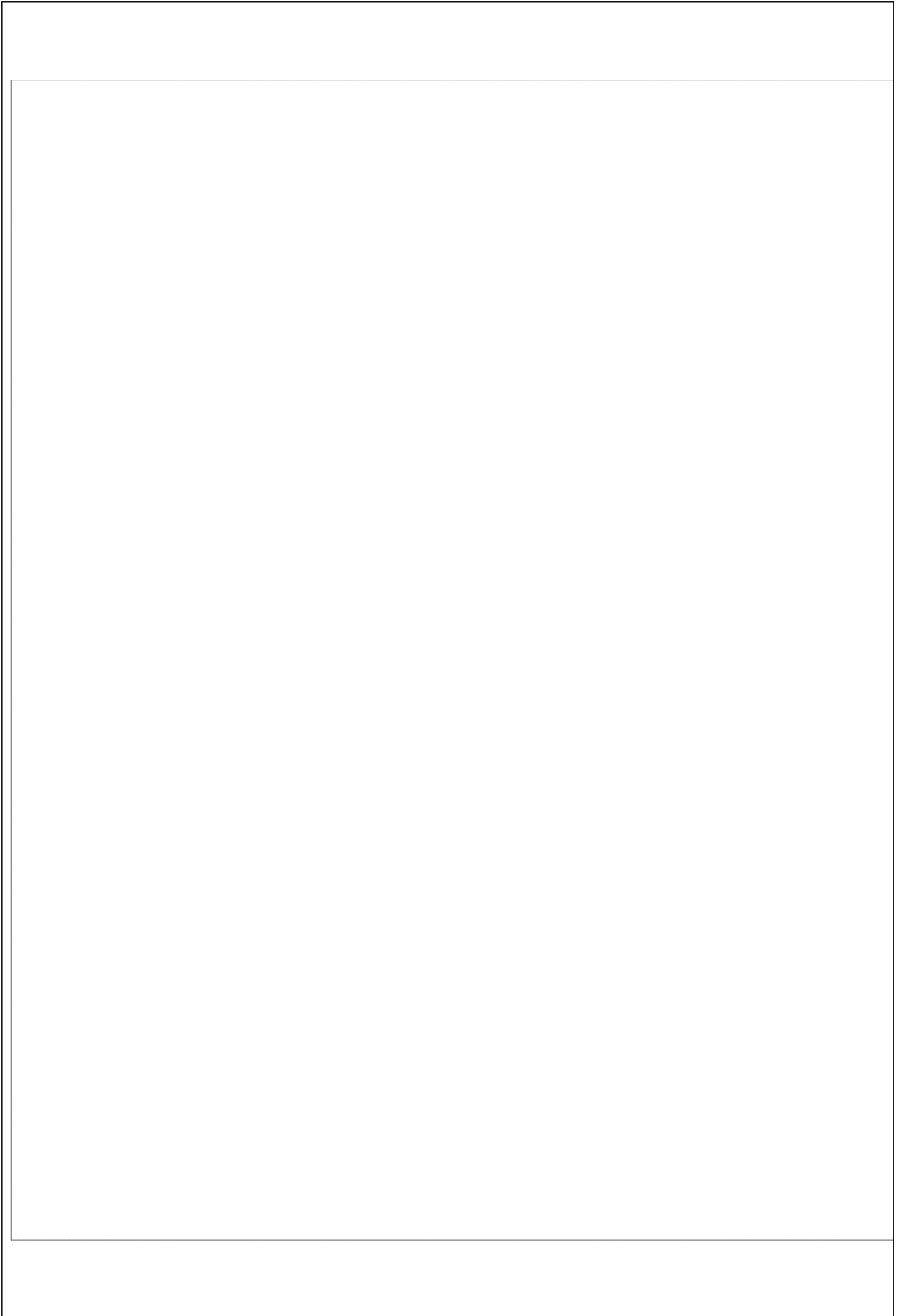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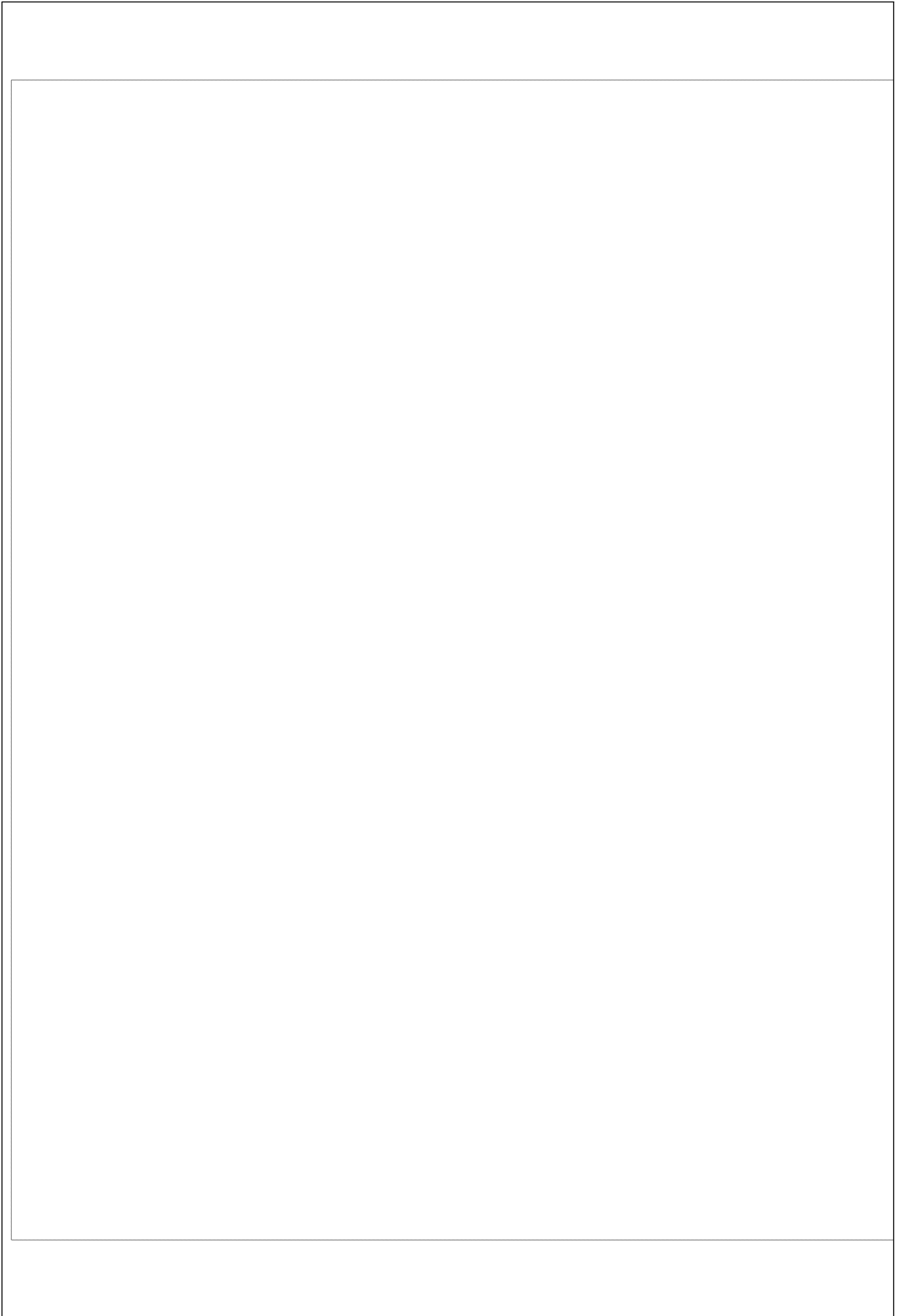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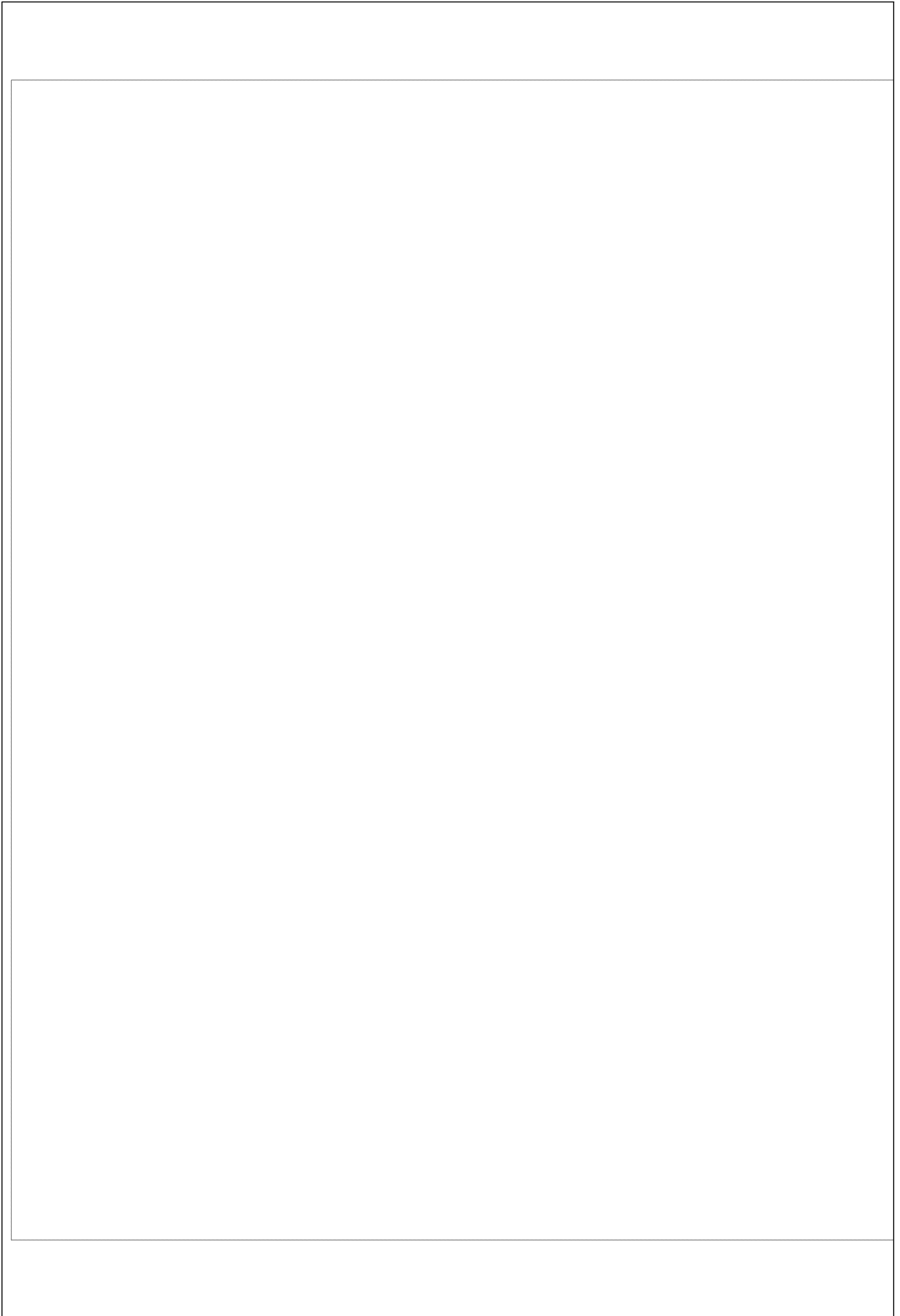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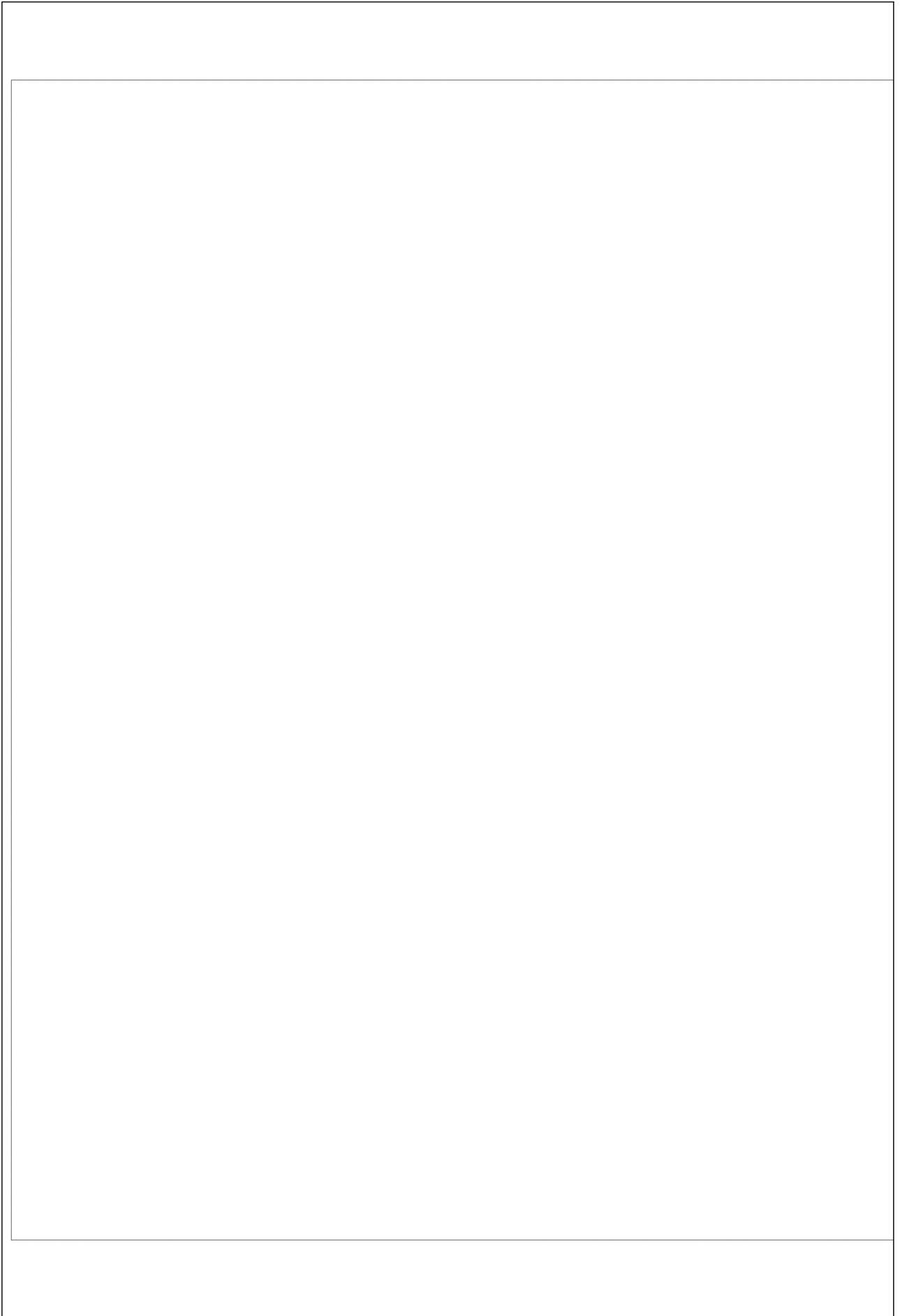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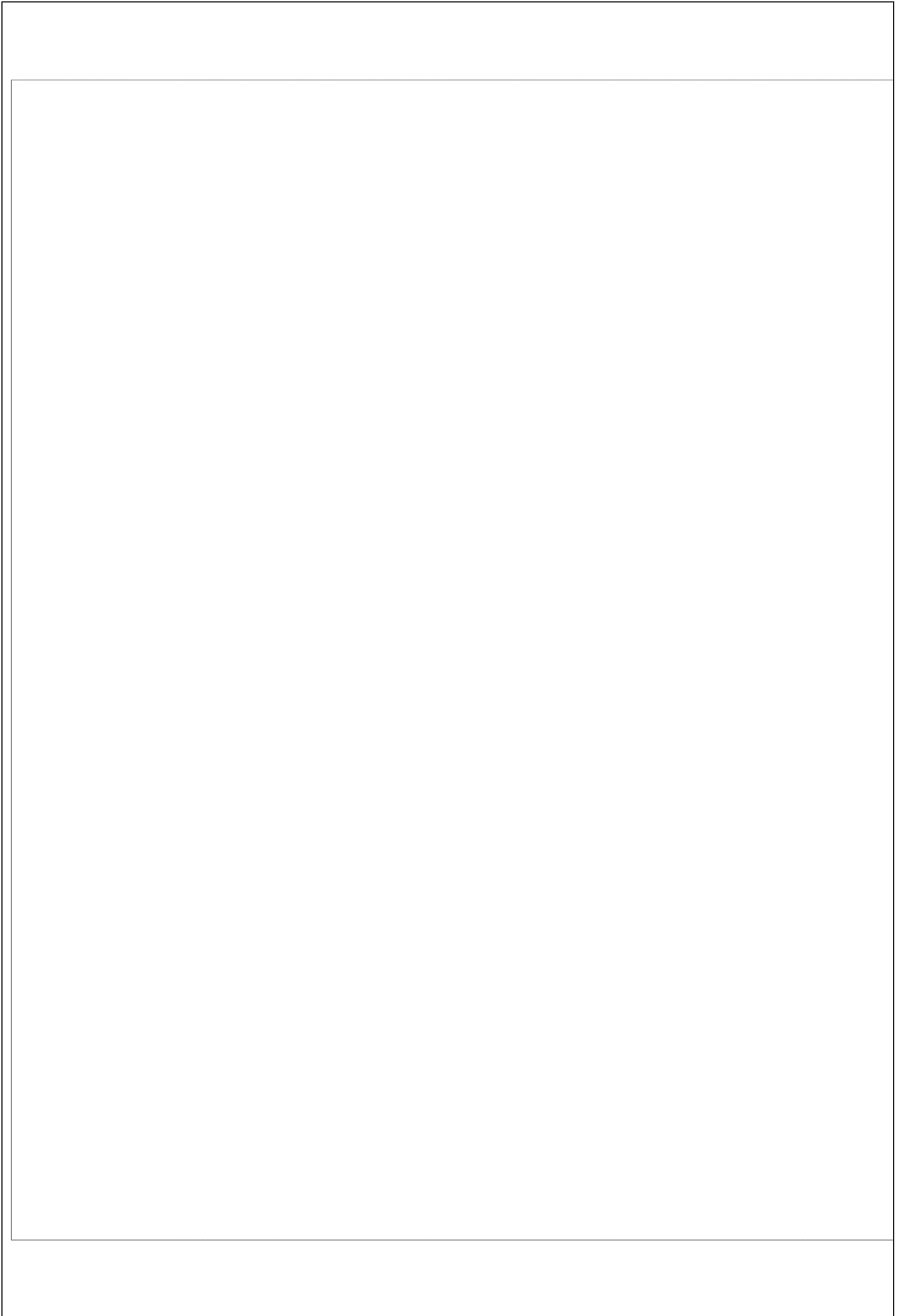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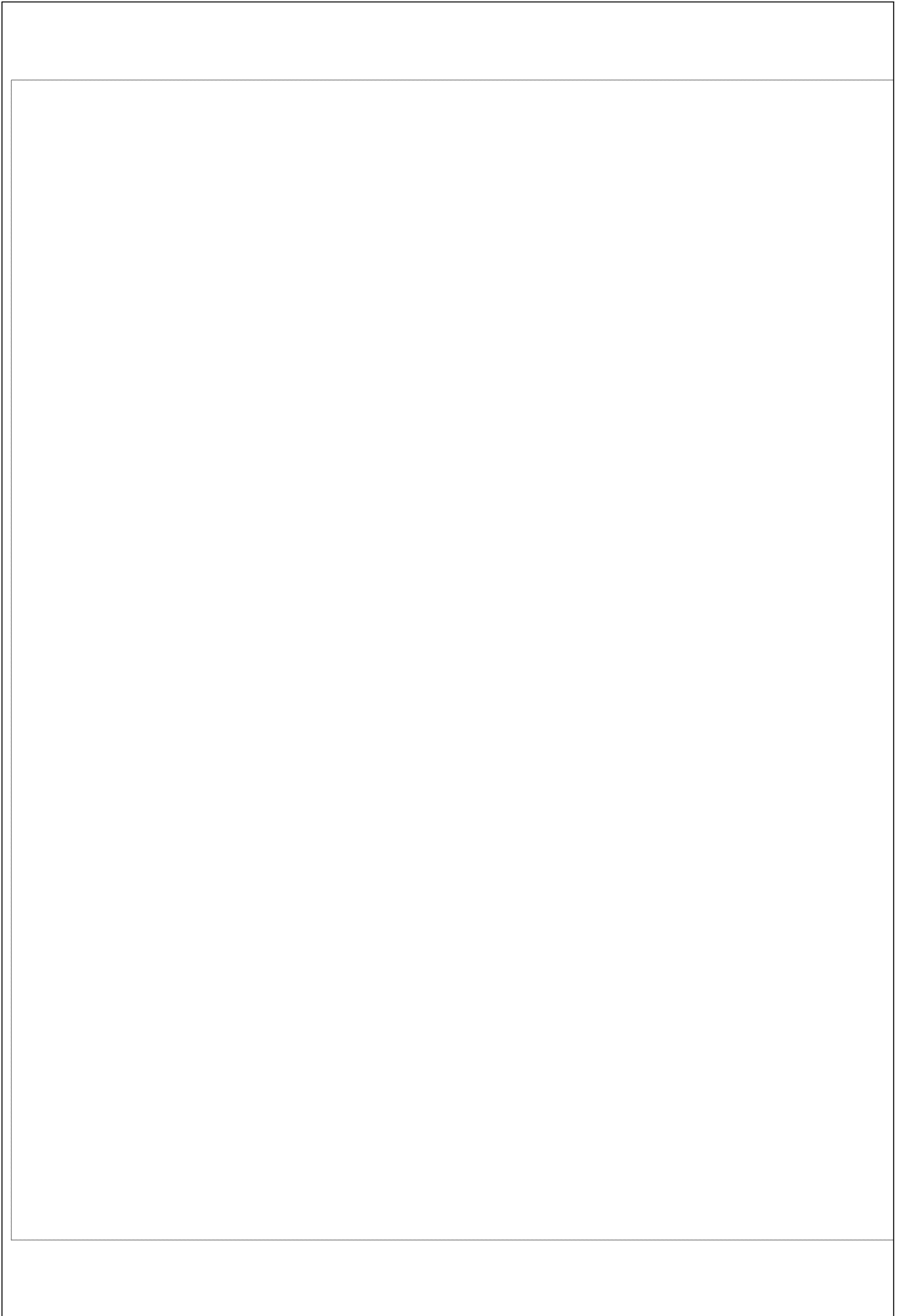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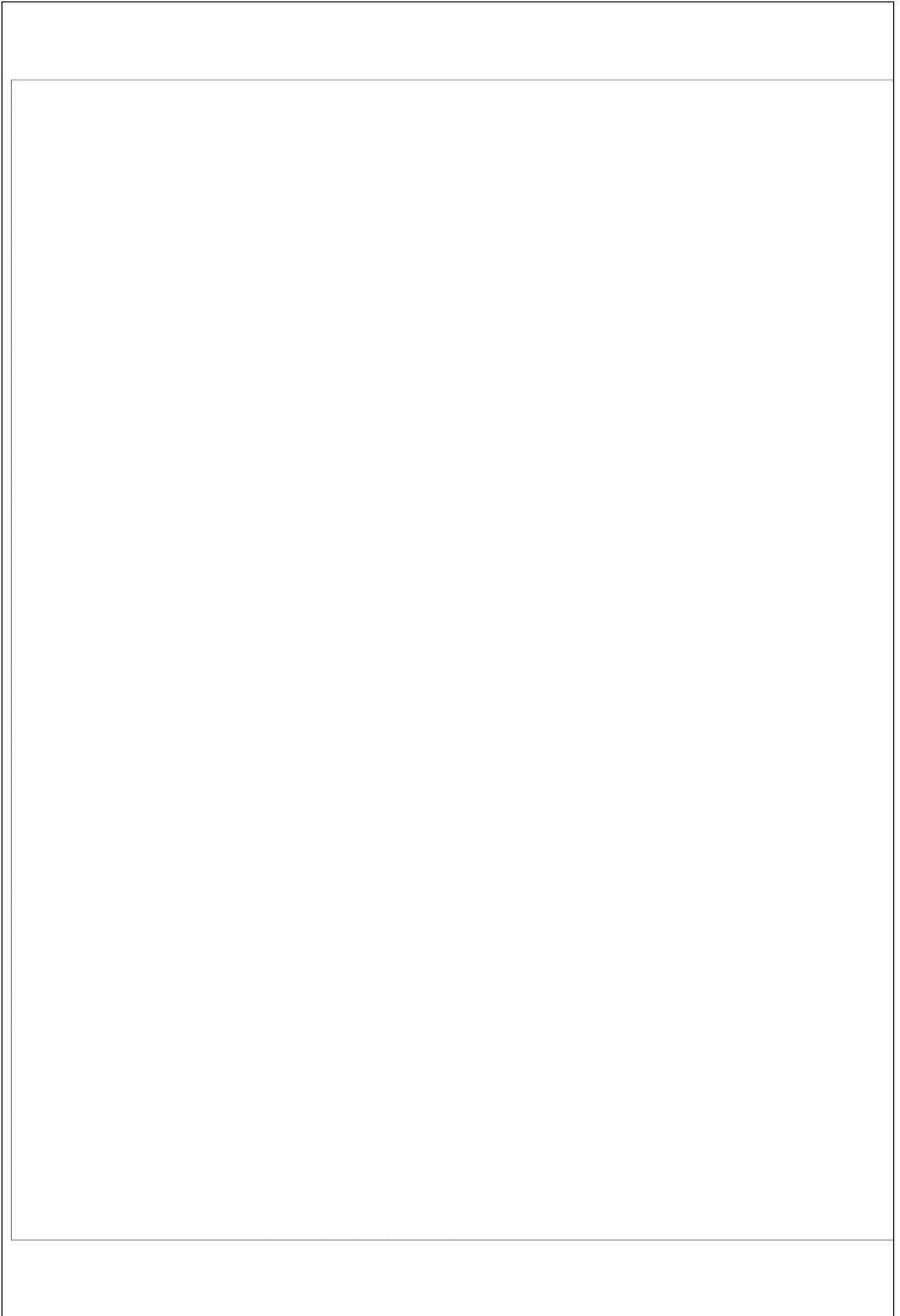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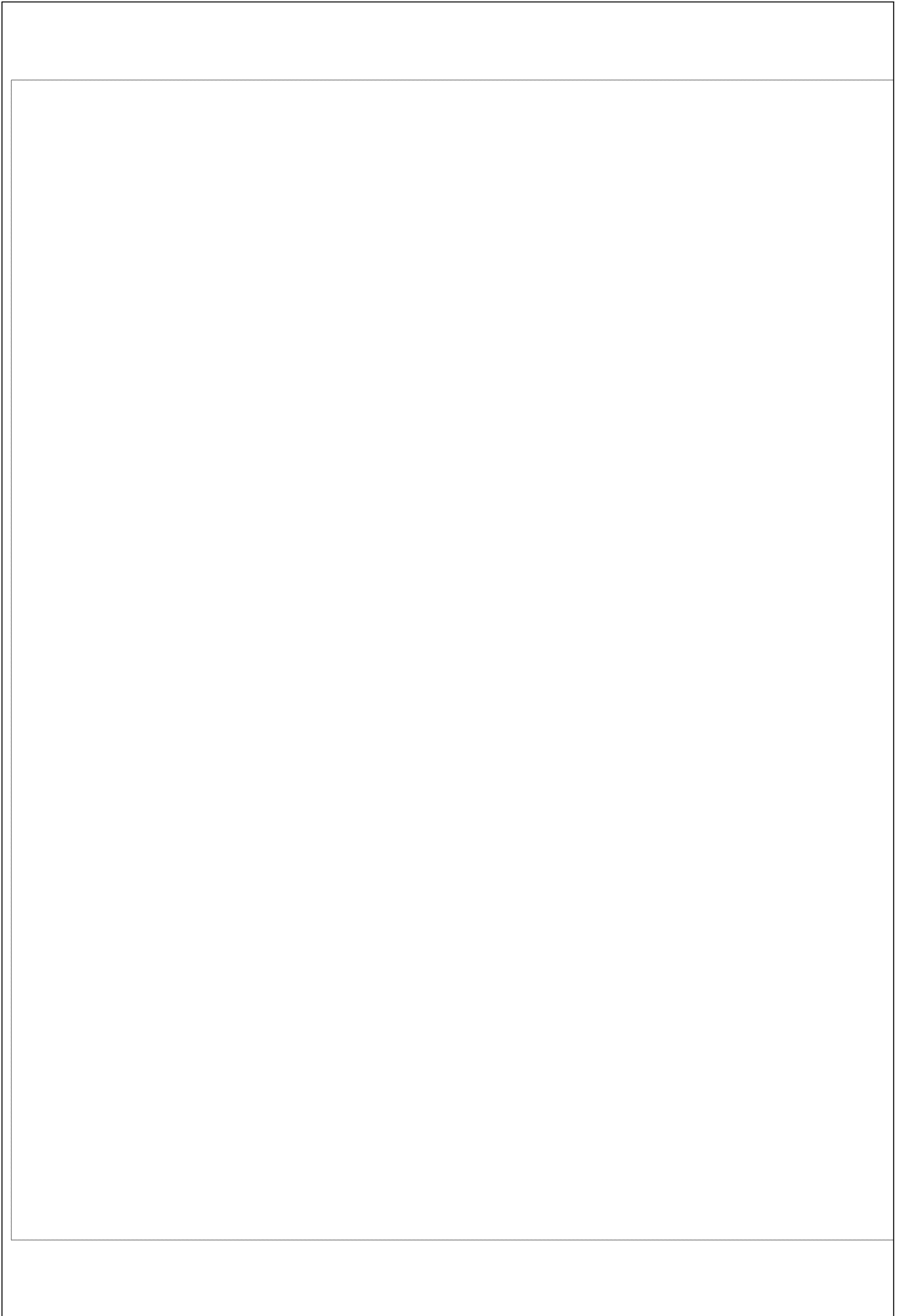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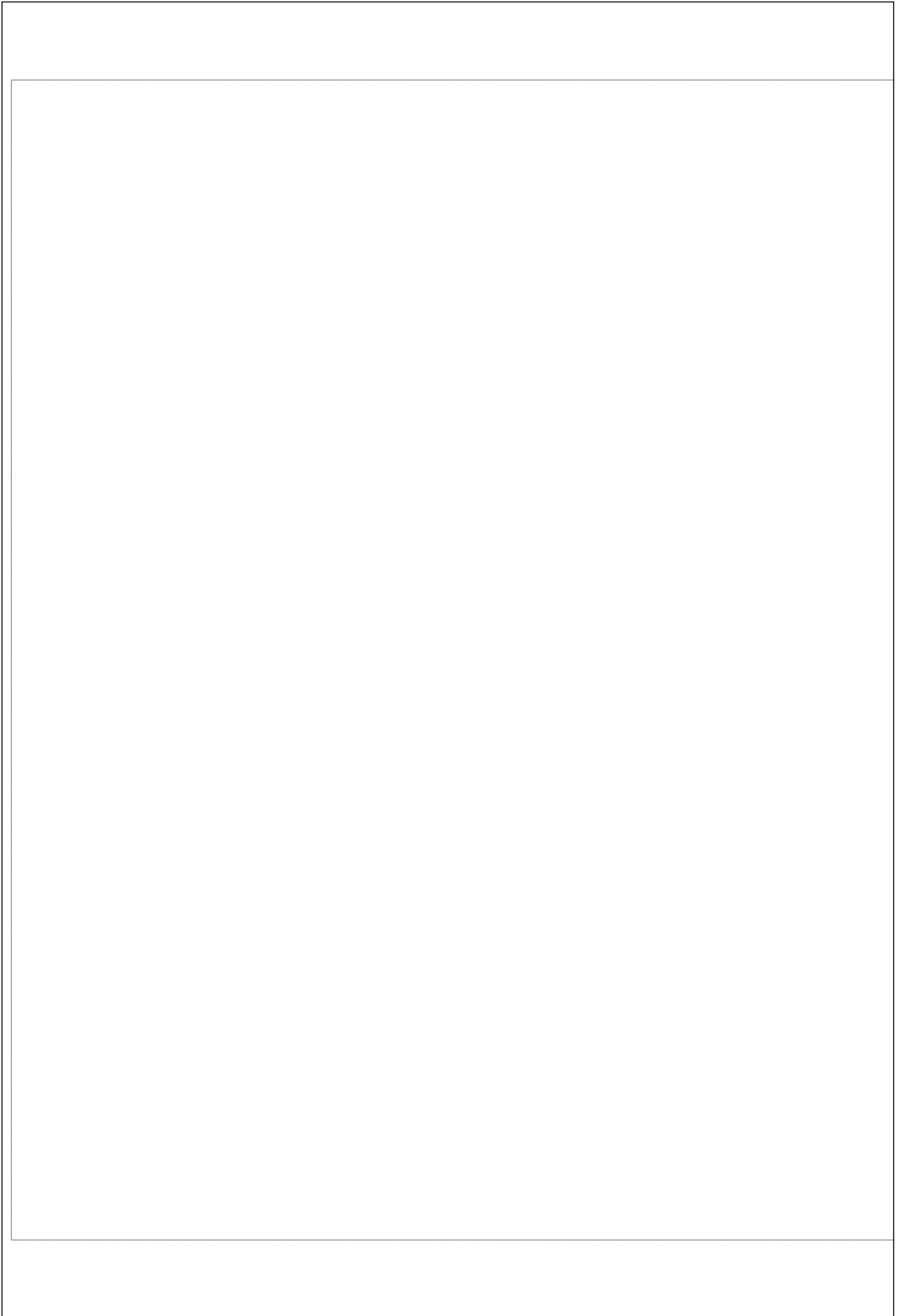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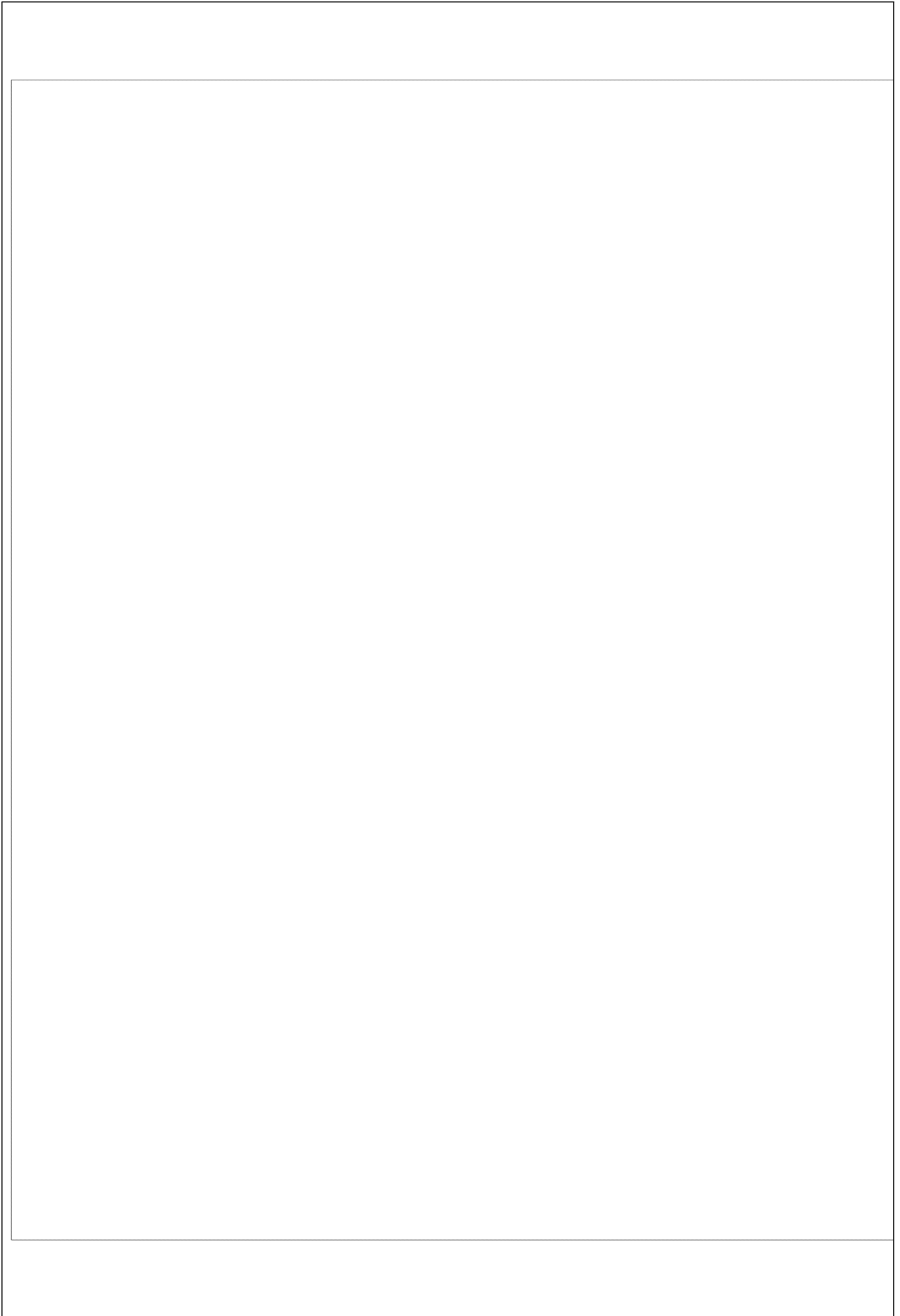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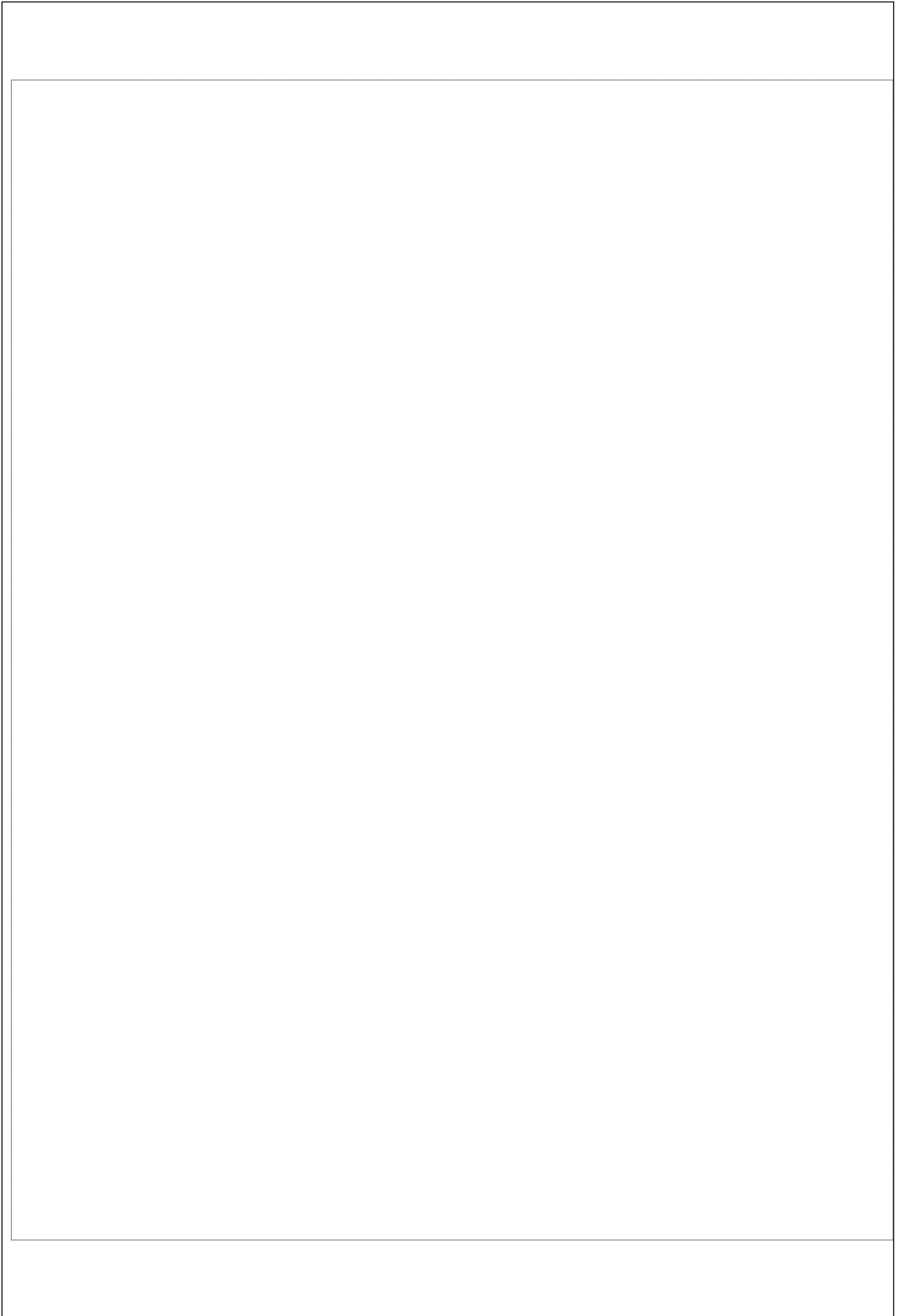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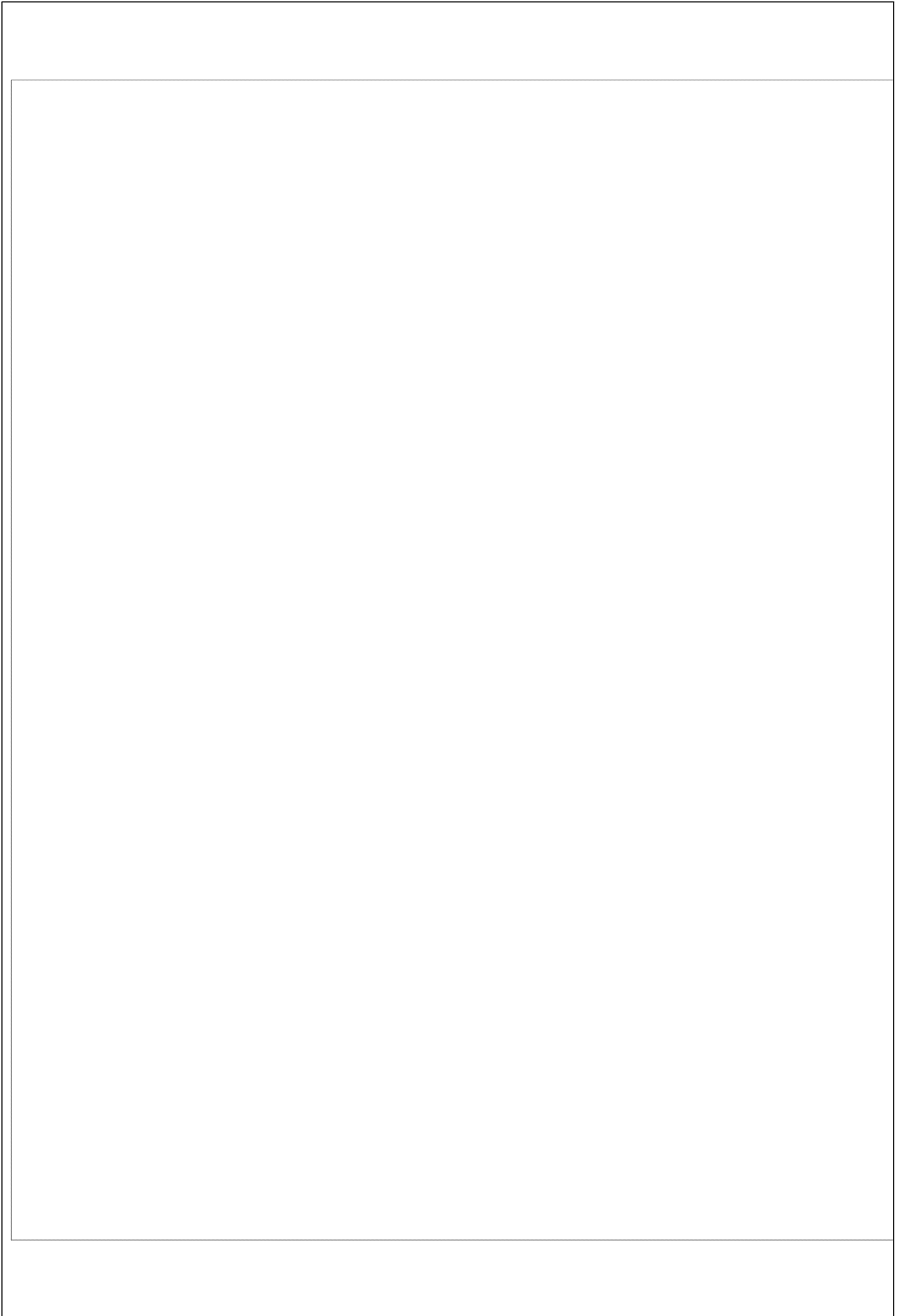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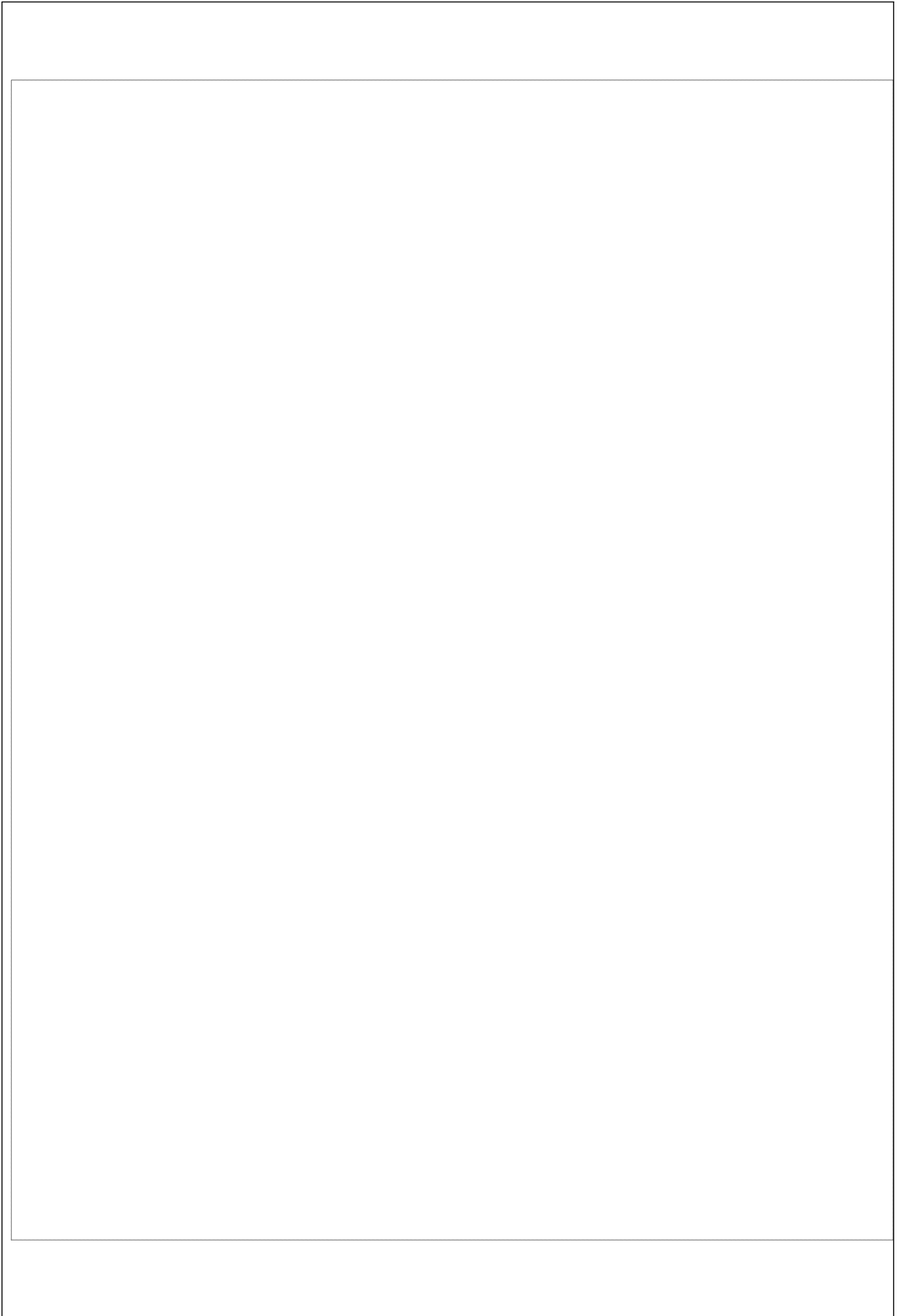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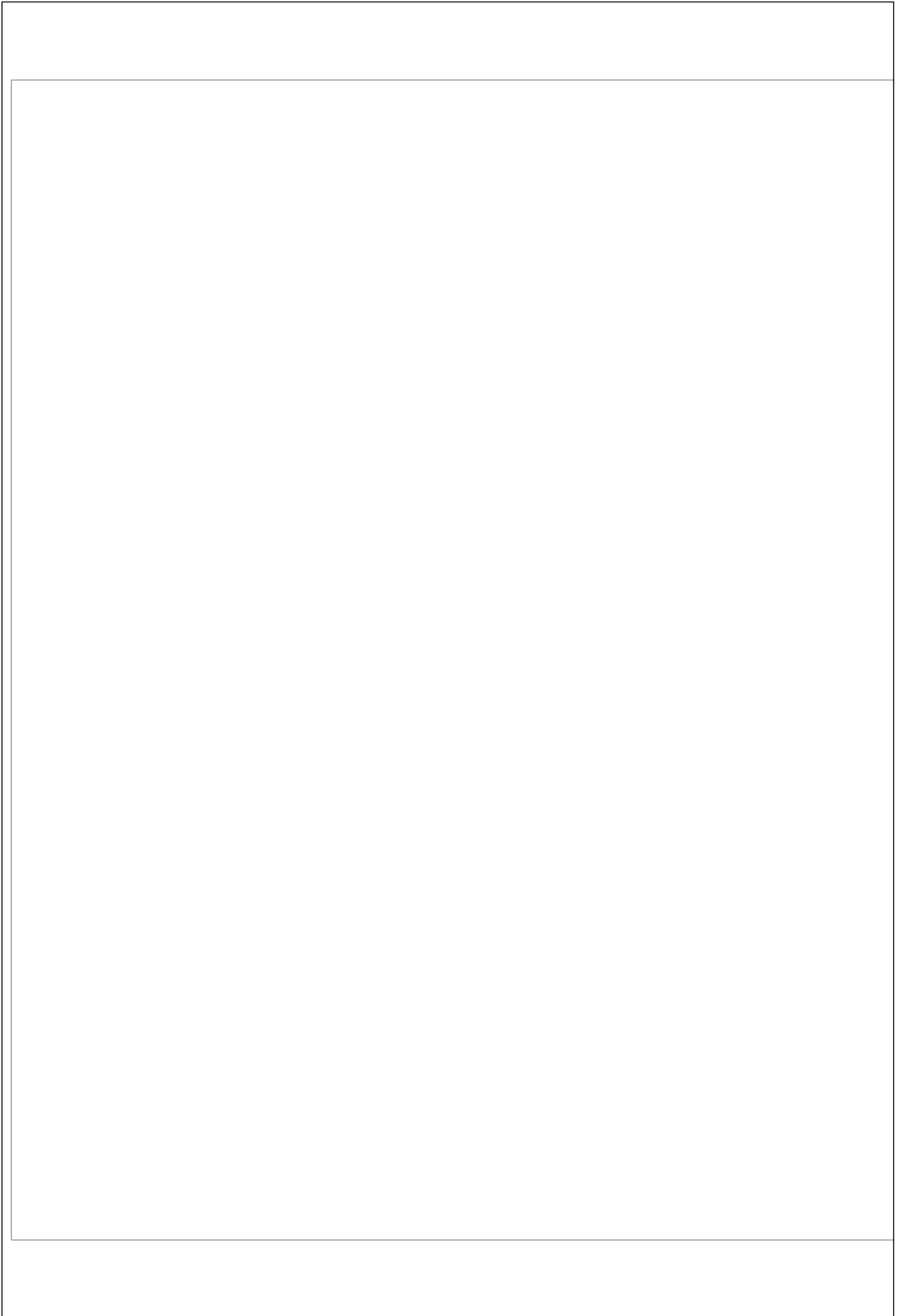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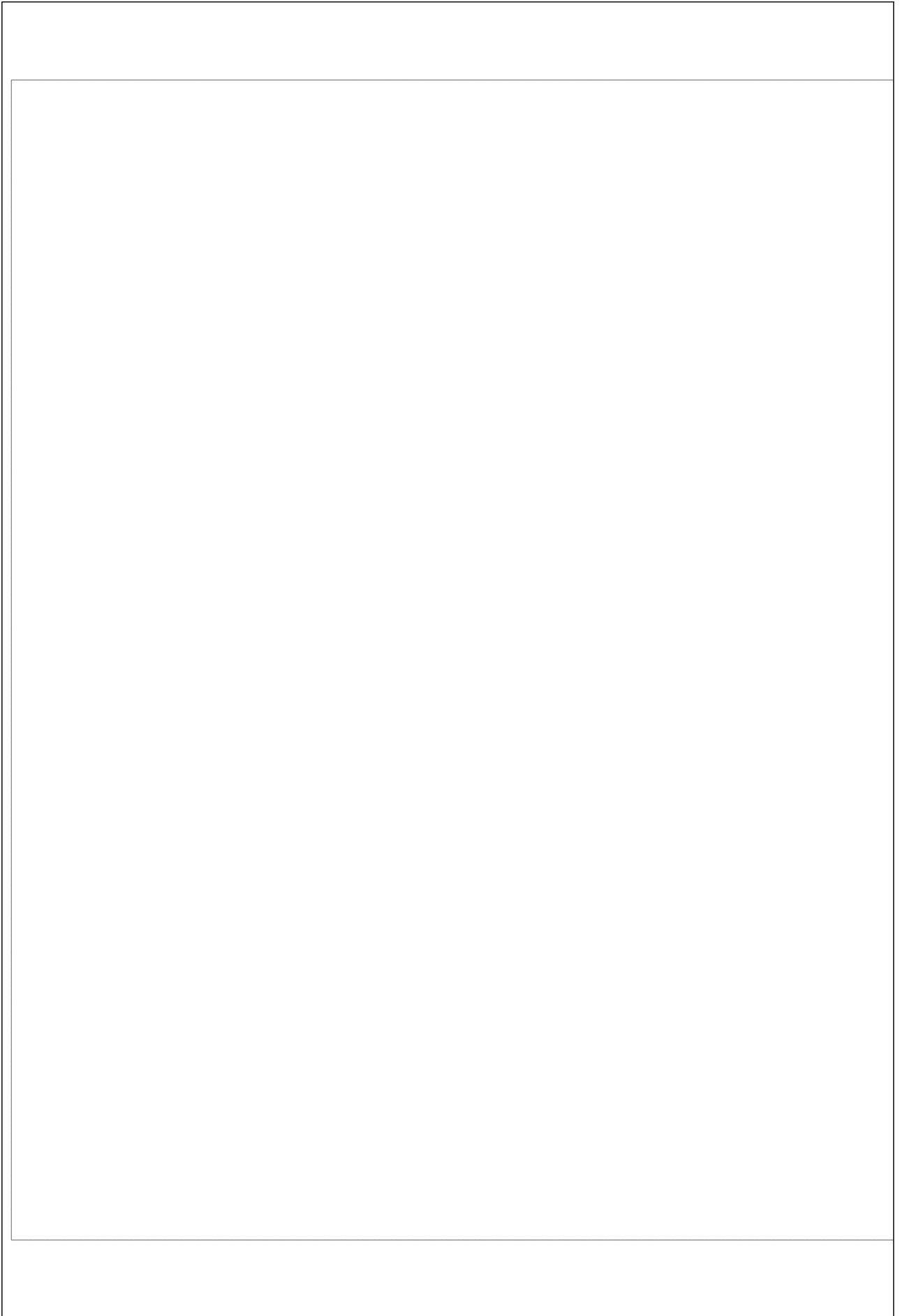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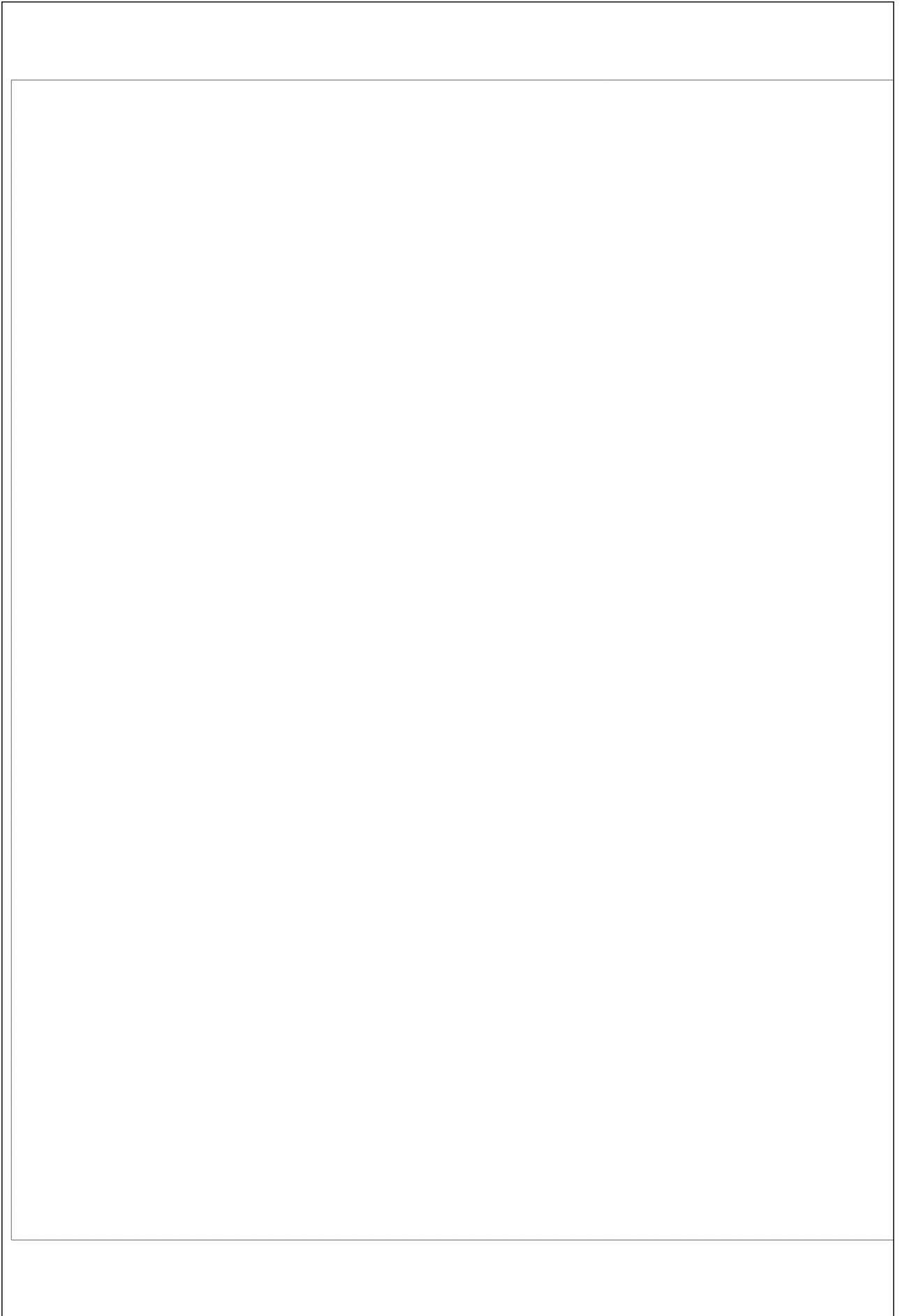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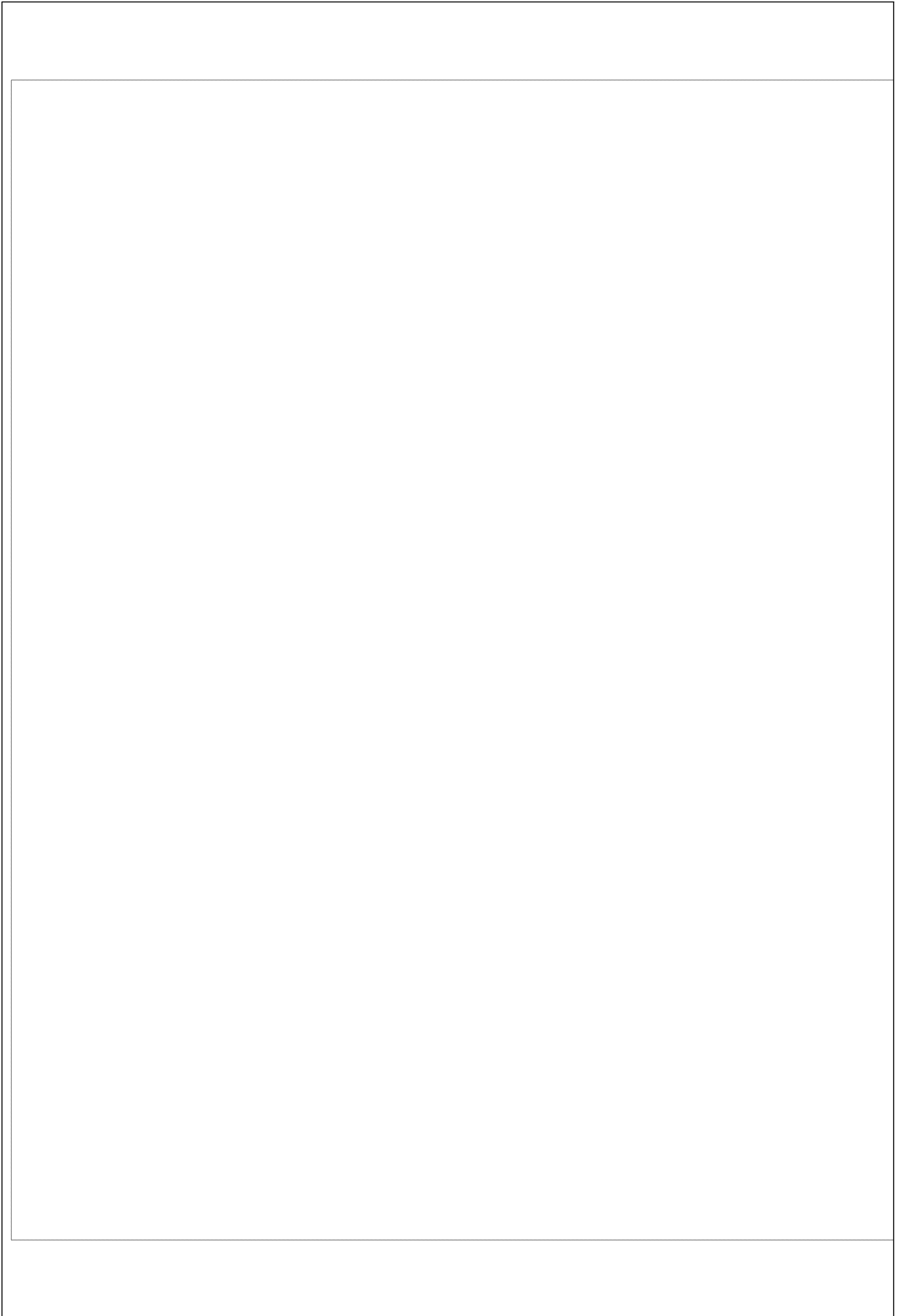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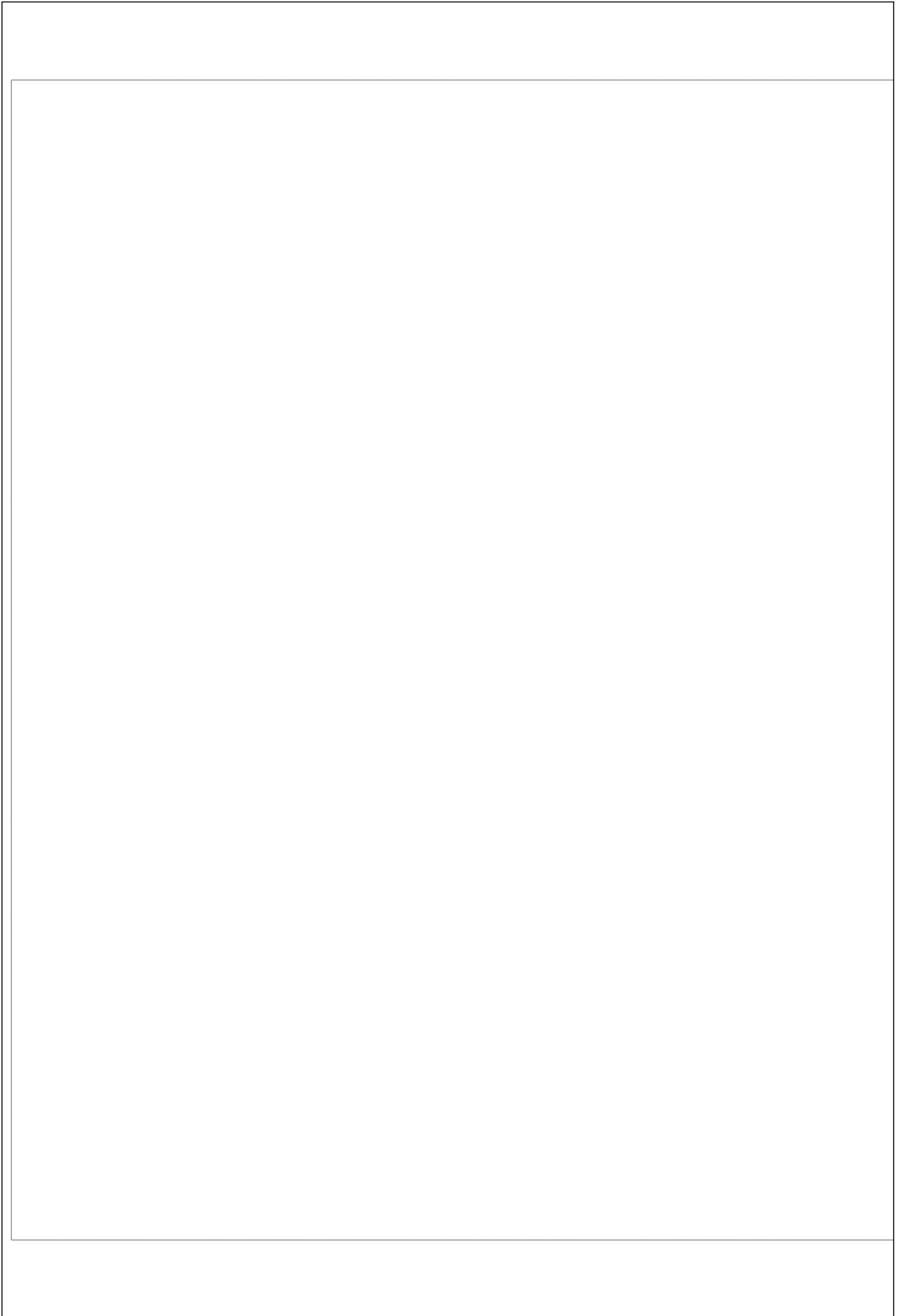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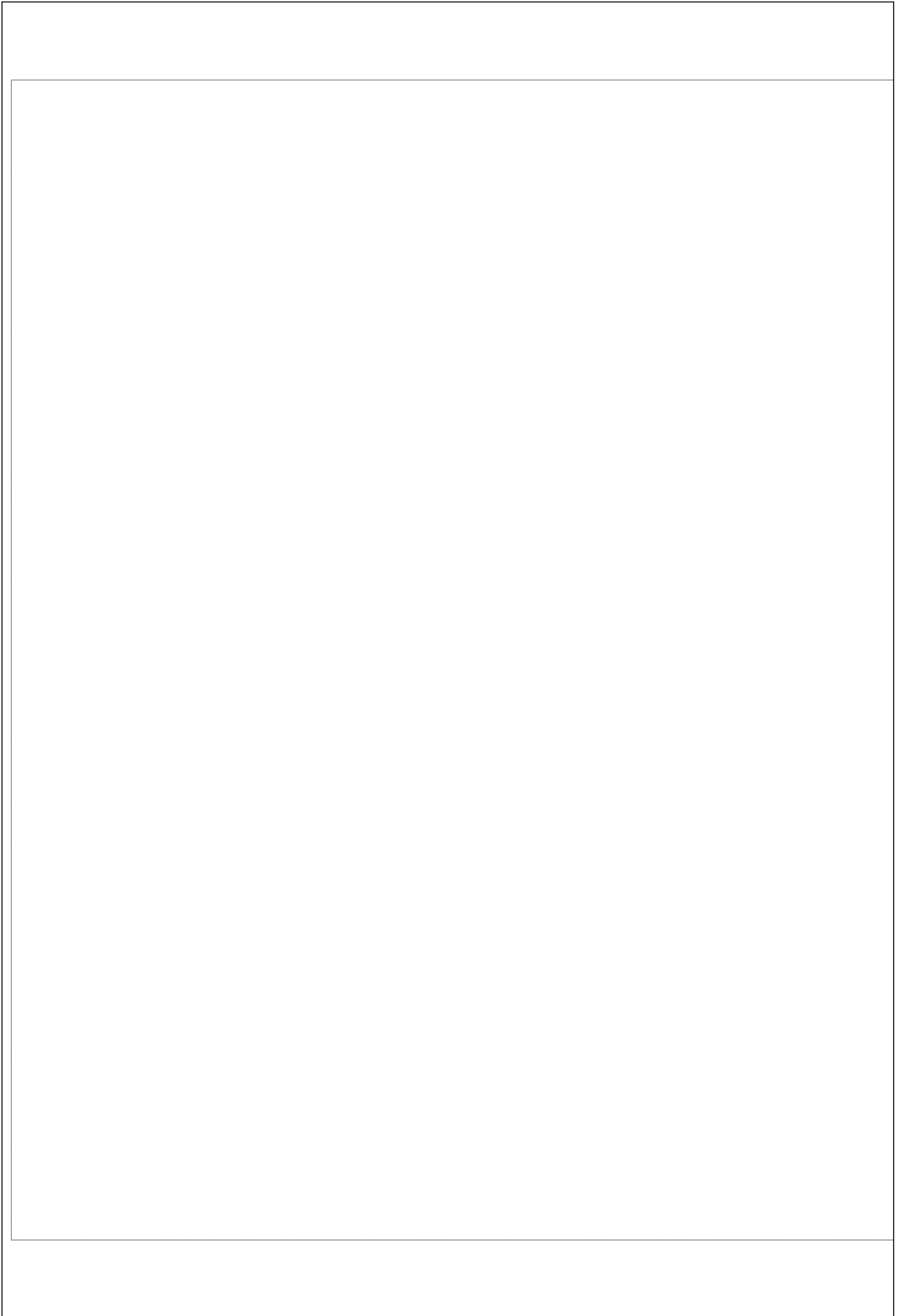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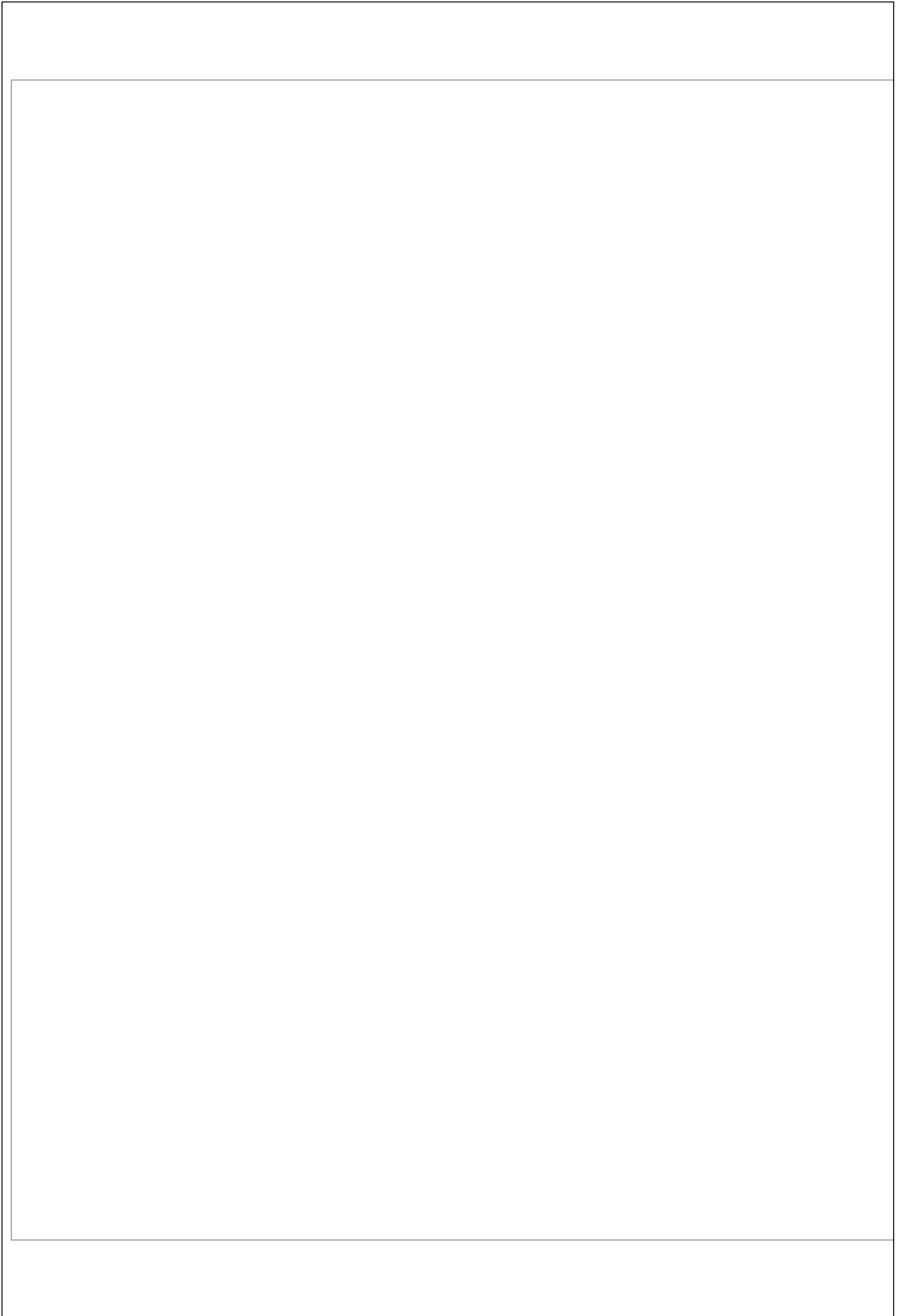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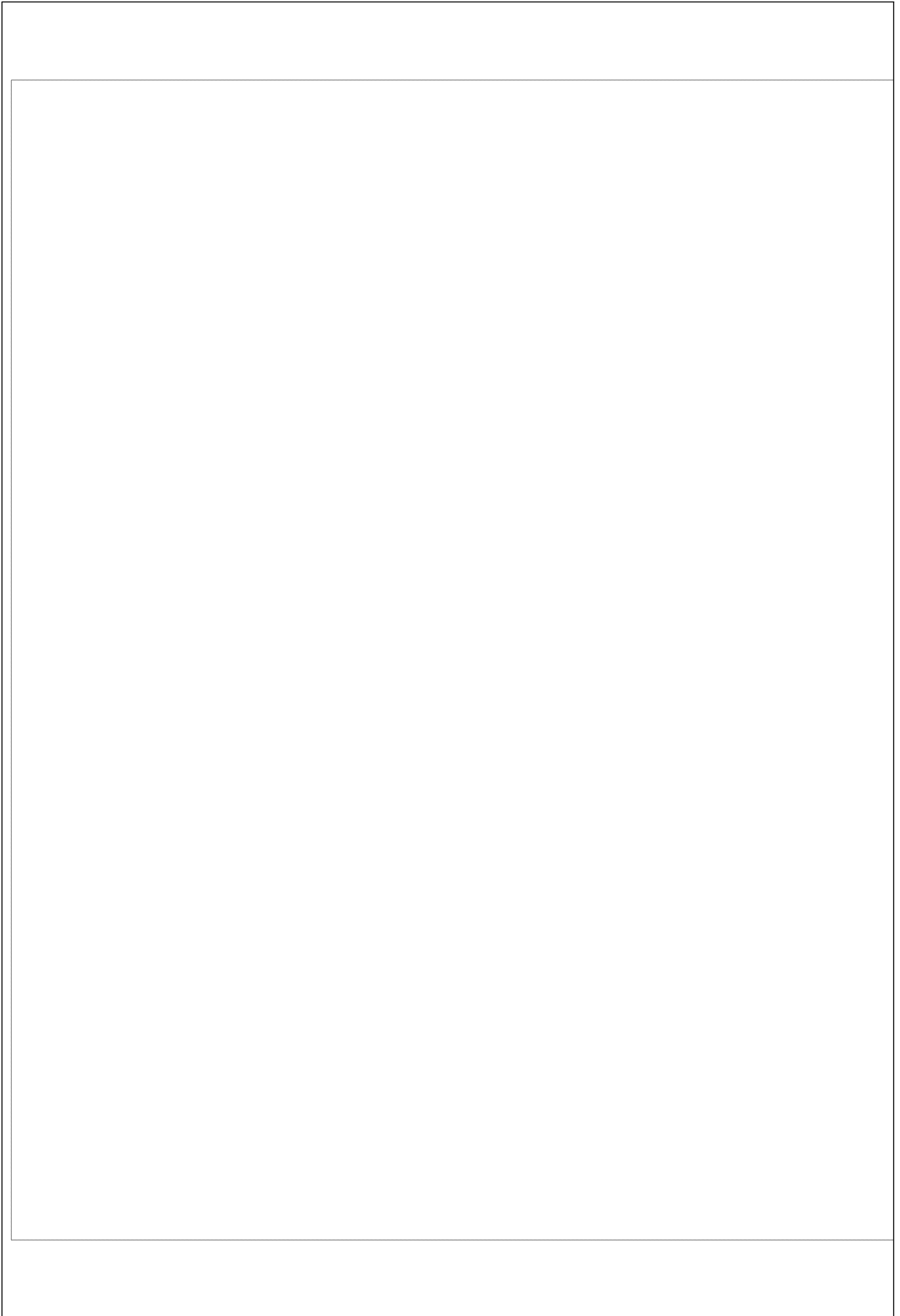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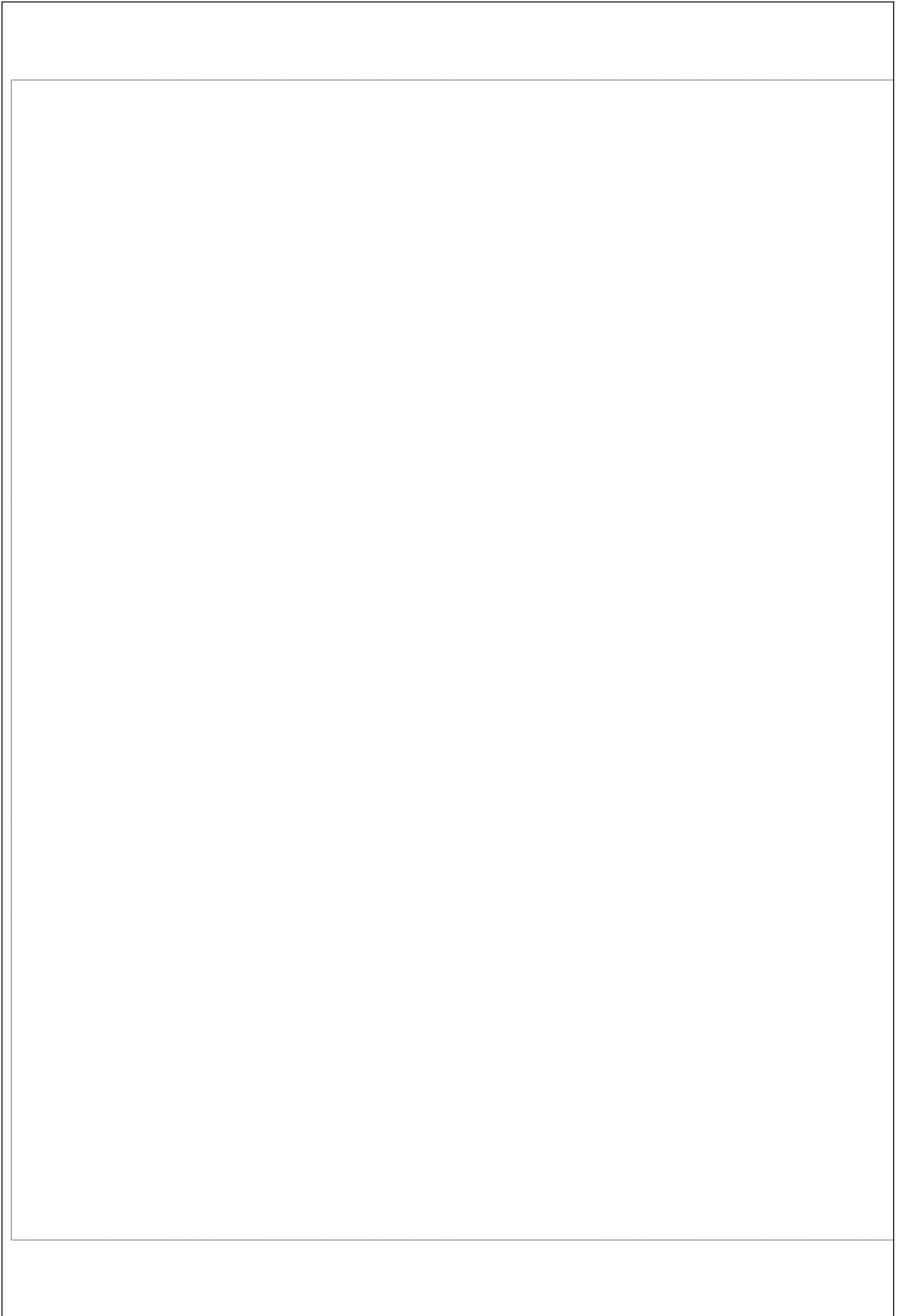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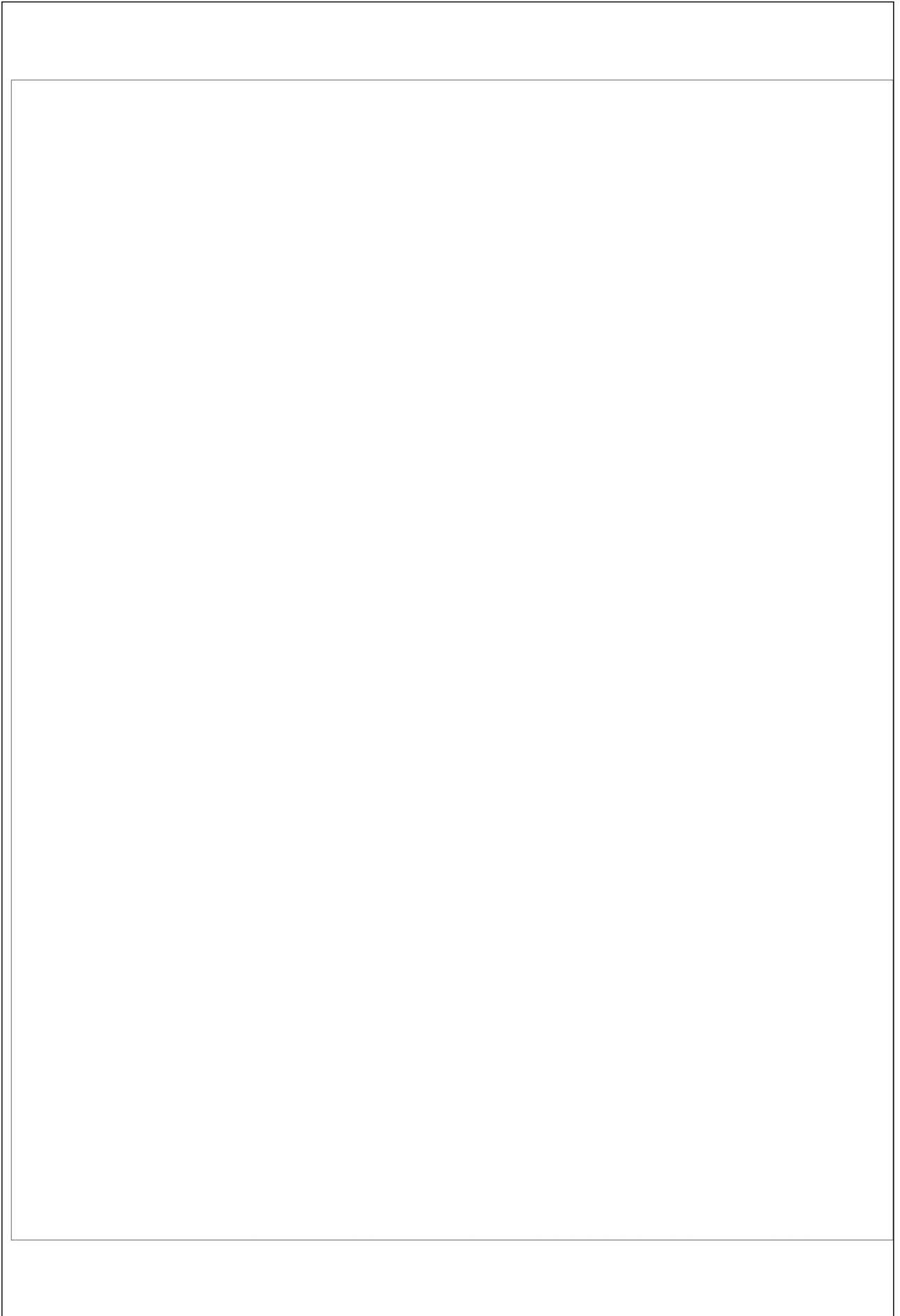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사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②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지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지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2026 - 4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고대 성곽 유적인 거열산성(군립공원)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거열산성 진입도로” 전체구간 중 2공구 종점부 산지 지역에서 “거창 분산성 발굴조사” 결과 거창 분산성 체성부 추정범위에 사업노선(2공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거열산성 진입도로(중로1-16호선)의 군관리계획 선형 변경이 필요함
- 나.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하여 중로1-16호선 및 연접도로의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개요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중로1-16 : 선형 변경
(B=20m→20~23m, L=4,572m→4,590m)
- 중로1-13 : 선형 및 종점 변경
(B=20m, L=2,200m→2,294m, 종점 : 중로1-16→중로3-5)
- 소로1-25 : 선형 및 기점 변경
(B=10m, L=236m→111m, 기점 : 중로3-5→중로1-16)

나. 결정(변경)사유

- 1)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한 중로1-16호선 선형변경
- 2) 중로1-16호선 변경에 따른 연계노선(중로1-13, 소로1-25)선형조정

다. 추진현황

- 1) 2026. 2. 20. : 군관리계획 입안(도시건축과)
- 2) 2026. 2. 20. ~ 3. 13.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라. 향후 추진계획

- 1) 2026. 3. 26. : 거창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 2026. 4. 9.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3. 참고사항

- 가.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도시) 결정(변경)안 : [붙임1]
- 나.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관련 도면 : [붙임2]
- 다. 관계법령 : [붙임3]

1.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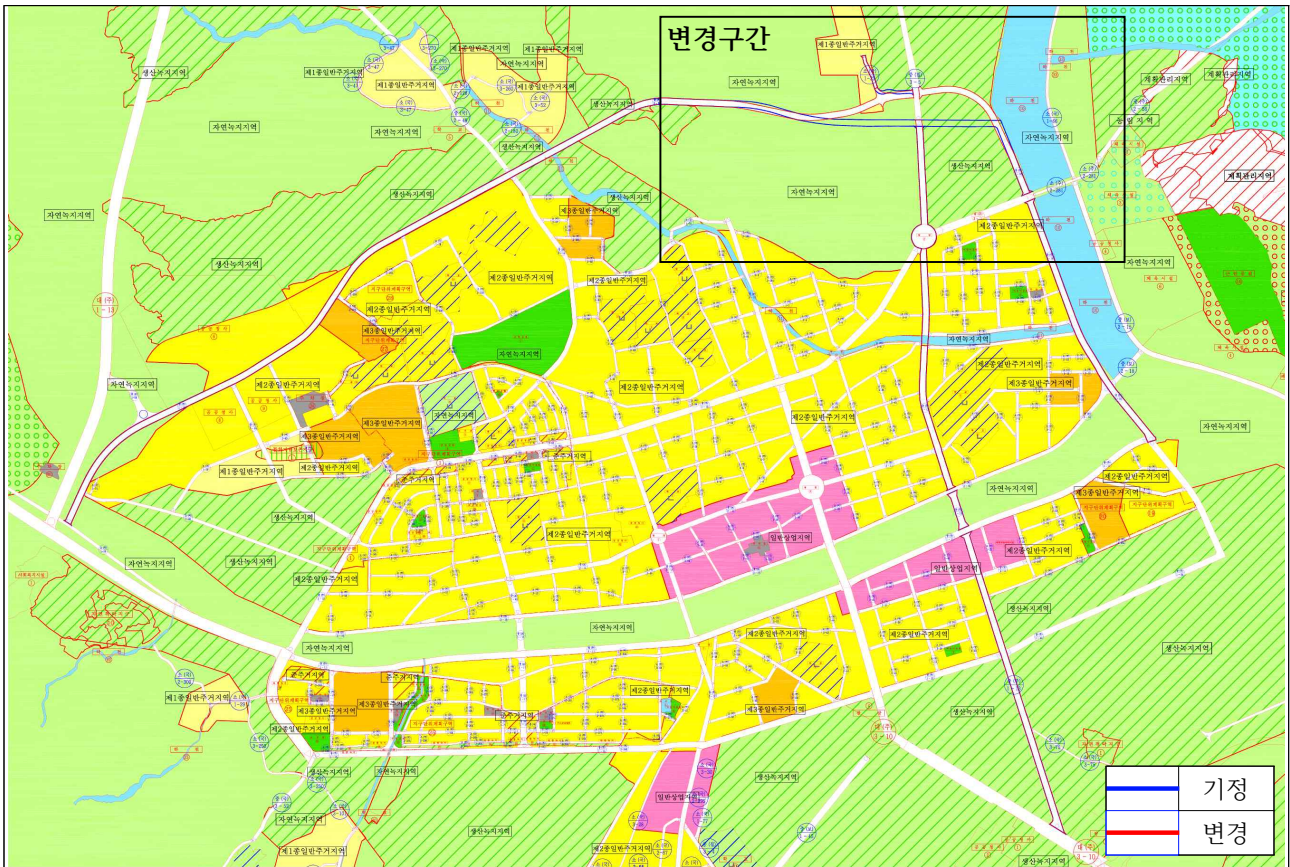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경 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	20	주간선 도로	2,200	대3-10	중1-16	일반 도로	2호 광장	건고195호 ('76.12.7)	
변경	중로	1	13	20	주간선 도로	2,294	대3-10	중3-5	일반 도로	2호 광장	건고195호 ('76.12.7)	
기정	중로	1	16	20	주간선 도로	4,572	중1-11	소1-34	일반 도로	소만 지구	경고465호 ('92.12.24)	
변경	중로	1	16	20~23	주간선 도로	4,590	중1-11	소1-34	일반 도로	소만 지구	경고465호 ('92.12.24)	
기정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236	중3-5	거창대동 529-1	일반 도로	-	경고465호 ('92.12.24)	
변경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111	중1-16	거창대동 529-1	일반 도로	-	경고465호 ('92.12.24)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3	중로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및 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B=20m L=2,200m→2,294m 종점 : 중로1-16→중로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6호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접 노선과 연계를 위한 선형 변경(연장) 및 종점 변경
중로1-16	중로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B=20→20~23 L=4,572m→4,59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의 설계 반영을 위한 선형 변경
소로1-25	소로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및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0m L=236m→111m 기점 : 중로3-5→중로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6호선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선형 조정(축소) 및 기점 변경

2. 군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안)도면

■ 전체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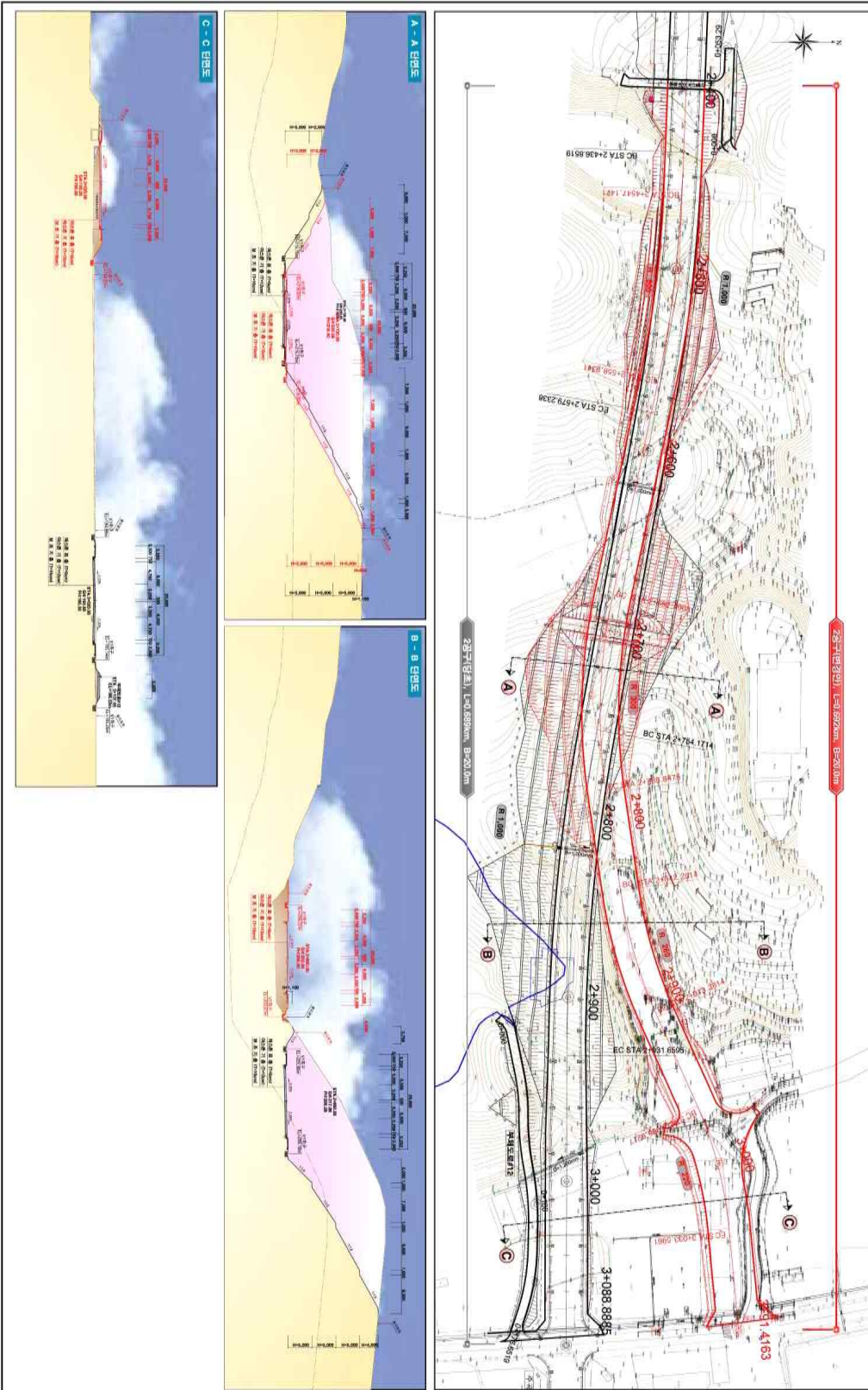


■ 변경구간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2공구)

현황 및 계획면도(변경계획안) <



거역사성 진입도로 개설공사(2공구)



용 지 도 (변경계획안) <



용 지 조 서

연번	소유권자	과면	과적	과적면적 (평방미터)	주소	비고
1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4	전	1,909	1,909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4-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1	전	2,298	2,444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1-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3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	전	1,007	3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1-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4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2	전	2,719	1,179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2-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5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3	전	4,128	1,179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3-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6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4	전	81	81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4-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7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5	전	1,009	1,009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5-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8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6	전	1,009	1,009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6-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9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7	전	2,018	1,621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7-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0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8	전	1,324	1,471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8-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1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9	전	606	58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9-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2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0	전	1,478	443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0-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3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1	전	81	17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1-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4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2	전	198	20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2-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5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3	전	1,007	681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3-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6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4	전	1,025	947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4-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7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5	전	298	298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5-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8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6	전	1,909	96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6-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19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7	전	1,909	96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7-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0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8	전	1,909	96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8-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1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19	전	1,909	96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19-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2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20	전	1,909	96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20-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3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21	전	191	86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21-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4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22	전	807	67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22-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5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23	전	181	15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23-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26	거역읍 공영재단	간동-24	전	1,013	44	용역도 거역도 거역읍 사역리 24-1 2008 000-10-100000000000000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

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사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안 번호	2026 - 4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진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동이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 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물가상승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모 신청

2.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 나. 사업기간 : 2027. ~ 2028.
- 다. 사업위치 : 거창읍 대평리 1366-1 일원(임대형 스마트팜 내 설치)
- 라. 사업규모 : 부하용량 4,143kW(3.6ha, 야간난방온도 16°C)
- 마. 사업내용 : 시설원예용 지열에너지 히트펌프 냉난방시설 설치
* 지열을 열원으로 응축하여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바. 사 업 비 : 3,583백만원[국비 2,508(70%), 도비 323(9%), 군비 752(21%)]

3. 추진계획

- 가. 2026. 5. : 인허가 사항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나. 2026. 7. : 공모(예비사업자) 신청(거창군→경남도→농식품부)
- 다. 2026. 8. : 평가(대면평가 및 현장답사)
- 라. 2026. 9. : 최종사업자 선정

4. 기대효과

- 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군비 부담 완화
- 나.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유류 난방시설 대비 40%이상 난방비 절감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의안 번호	2026 - 4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가. 2011년 개관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은 전시시설 노후화와 표본 및 설명 위주의 정적인 콘텐츠로 관람객의 지속적 유입에 한계가 있음
- 나. 어린이에 맞춘 체험형 과학 콘텐츠 확충으로 천적·생태·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놀이형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으로 개선코자 함

2. 공모개요

- 가. 사업명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7. ~ 2028.
 - 다.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50%), 군비 1,000(50%))
 - 라. 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마. 사업내용 : 전시시설 개선 A=600㎡, 체험온실 개선 A=263㎡
- ※ 공모내용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비용(어린이 과학체험공간과 직접 관계된 비용만 사용 가능(신축, 증축 불가))

3. 추진계획

- 가.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추경편성 : 2026. 8. ~ 9.
- 나. 사업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6. 9. ~ 11.
- 다. 공모사업 신청 : 2026. 12. ~ 2027. 1.
- 라. 선정 발표 : 2027. 4.

4. 기대효과

- 인접한 사과테마파크, 반려동물 놀이터('26년 준공), 아트갤러리('27년 준공)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복합문화·여가시설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방문객 증가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위 치 도



현장사진



표본위주의 전시관 내부



노후화된 곤충체험온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유기농복합단지 융복합시설 구축) 공모 신청 보고

의안 번호	2026 - 4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가. 거창창포원 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복합시설인 유기농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유기농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내부 가공설비·전시·체험·판매 관련 융복합시설·장비 구축으로 관광소비시장에 적극 대응코자 함

2. 공모개요

- 가. 사업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나. 사업기간 : 2027. ~ 2028.
- 다. 사업비 : 1,800백만원(전환도비 900(50%), 도비 270(15%), 군비 630(35%))
- 라. 위치 :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일원(유기농복합단지 조성 부지)
- 마. 사업내용 :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F&B 설비, 전시·체험·판매시설 구축
 - 1) (체험농장) A=6,304m²
 - 2) (가공실) 가공장비 (카페/레스토랑/체험장) F&B 장비, 체험장비, 테이블 등
 - 3) (씨앗도서관) 씨앗 전시대, 체험장비, 테이블 등 (판매장) 진열대, 냉장·냉동 쇼케이스, POS시스템 등

3. 추진계획

- 가. 도비 확보 방문 및 공모사업 신청 : 2026. 4.
- 나. 적격성 심사 : 2026. 5.
- 다.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예산 심의 : 2026. 5. ~ 10.
- 라. 선정 발표 : 2026. 11.

4. 기대효과

- 가. 친환경농산물 로컬판매장과 유기농 레스토랑, 카페 등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나. 거창창포원의 생태관광과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연계하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업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7. 12.(6년간)
- 사업비 :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6,300)
- 사업량 : 대지면적 13,063.6㎡, 건축연면적 3,558.26㎡
-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거창창포원 일원)
- 사업내용 : 유기농 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가공실, 식문화 교육장 등

추진현황

- 2021. 4. : 거창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원안 의결)
- 2022. 3. : 공모사업 선정
- 2022. 7.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단계)
- 2023. 10. :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 2024. 7. : 거창군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4. 10. : 설계용역 착수
- 2025. 5. : 건축허가 신청(거창군 도시건축과)
- 2025. 7. : 거창군관리계획 입안 신청
- 2025. 9. : 제8회 군계획위원회심의
- 2025. 10. :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 2025. 11.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 2025. 12. : 농업진흥구역 해제 농정심의(원안 가결)
- 2026. 1. :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운영계획) 시행계획 승인
- 2026. 2.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26. 2. : 유기농복합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향후계획

- 2026. 3.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6. 7. : 실시설계 완료(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6. 7. :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시행계획 승인
- 2026. 10. ~ 2027. 12. : 건축 공사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2026 - 4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수립 중인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 개요

1) 계 획 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2) 계획기간 : 2026. ~ 2035.(10년간)

※ 여건 변화를 고려 5년마다 재검토, 필요시 정비(수정, 보완)

3) 수립방법 : 전문업체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업체 : (주)엔브이(경남 창원 소재)

- 용역기간 : 2024. 9. ~ 2026. 6.(22개월)

- 용 역 비 : 339백만원

4) 주요내용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을 위한 기초조사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지자체별 2개지역 이상 필수)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등

3. 기본계획(안)

가. 계획의 범위

1) 기 간 : 2026. ~ 2035.(10년간)

2) 대 상 : 거창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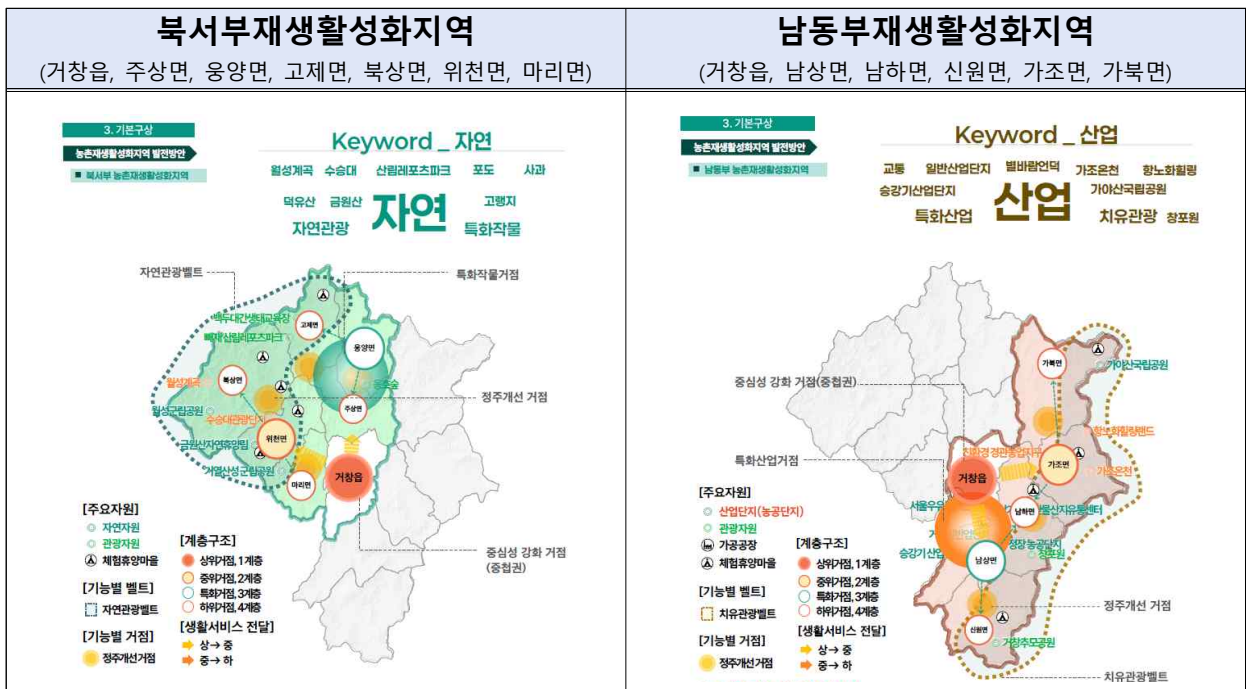
3) 내 용

“군단위 장기발전계획” 10년 후 거창군의 발전상	
- 지역적 여건 및 특성 분석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2개 이상
- 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 농촌특화지구(후보군도출)

나.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 1) 방향 : 거창읍의 중심성을 활용한 면단위 특화발전
- 2) 설정(안) : 거창읍 중첩 북서부 및 남동부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 ▶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 :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자연] 특화작물 및 자연관광 고도화 / [생활] 중위거점(위천면) 조성
- ▶ 남동부 재생활성화지역 : 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산업] 특화산업 및 관광산업 고도화 / [생활] 중위거점(가조면) 조성



다.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 1) 도출과정 : 읍·면별 특화지구 수요 조사(주민토론회) → 공간특성 및 현황 진단
- 2) 후보군(안) : 총 6개 유형 49개 후보군 도출

구 분	지구수	비 고(지정요건)
합계	49	공통 : 소유주, 지역주민간 주민협정체결
농촌마을보호지구	19	
농촌산업지구	8	30,000m ² 이상
농촌융복합산업지구	9	30,000m ² 이상
재생에너지지구	6	50,000m ² 이상
경관농업지구	3	
특성화농업지구	4	

3) 읍·면별 후보군 현황

- 적용 가능한 농촌특화지구 우선순위 : **농촌마을보호지구 > 경관농업지구 > 농촌산업지구 > 특성화농업지구 > 재생에너지지구 > 농촌융복합지구**
- 적용 어려운 농촌특화지구 순위 : **축산지구 > 농업유산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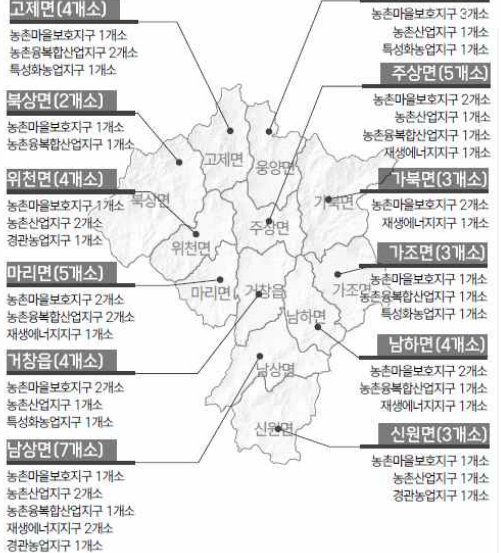
[축산지구]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기준, 집단화를 위한 공간 확보 어려움 (주거 밀집지역 외곽의 가구의 대지 경계선 기준 이격거리: 돈사-계사 800m, 우사: 200m 이내)
 [농업유산지구] 농업유산지구 내용의 기준이 되는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로 해당내용의 목적, 선정기준인 국가중요농업유산(NIAHS)은 거창군에 적용이 어려움

유형별 후보군 도출

읍면별	합계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재생에너지 지구	경관농업지구	특성화 농업지구
거창군	49	19	8	9	6	3	4
거창읍	4	2	1	0	0	0	1
주상면	5	2	1	1	1	0	0
웅양면	5	3	1	0	0	0	1
고제면	4	1	0	2	0	0	1
북상면	2	1	0	1	0	0	0
위천면	4	1	2	0	0	1	0
마리면	5	2	0	2	1	0	0
남상면	7	1	2	1	2	1	0
남하면	4	2	0	1	1	0	0
신원면	3	1	1	0	0	1	0
가조면	3	1	0	1	0	0	1
가북면	3	2	0	0	1	0	0

거창군 적용 가능한 농촌특화지구 도출

-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 및 현황 진단을 통해 후보군 도출
- 6개 유형, 49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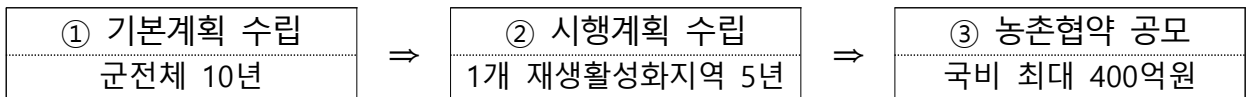


※ 농촌특화지구 지정 : 필요시 소유주, 지역주민이 주민협정 체결을 통해 지정
 → 시행계획에 반영

4. 향후 계획

- 1) '26. 3. 31. : 기본계획 기초정책 심의회 심의 및 농식품부 협의 신청
- 2) '26. 4. 27. : 기본계획 농식품부 → 지자체 의견 통보
- 3) '26. 5. : 기본계획 경남도 광역정책심의회 심의 및 승인
- 4) '26. 6. : 기본계획 승인공고 및 시행계획 수립 착수
- 5) '27. 5. ~ 6. : 시행계획 수립 완료 및 농촌협약 공모 평가
- 6) '28. 3. : 농식품부 주관 계획 수정·보완, 농촌협약 체결

※ 농촌협약 공모 추진 절차



5. 참고사항

-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관련 법률 (붙임 1)
- 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요건 (붙임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유주, 지역주민이 주민협정 체결을 통해 지정 → 시행계획에 반영

<p>농촌마을보호지구 국계법상 지구</p> <p>[마을 외곽 주택 대지경계부터 완충영역] 지구의 개념</p> <p>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장애에 정주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는 배후마을</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p>농촌산업지구 사업지구</p> <p>[공장, 창고시설 등 집단화 가능지역 30,000m] 지구의 개념</p> <p>개발입지해 있는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을 집적화 하기위한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일반공업지역 2. 녹지지역 3. 관리지역 4. 농림지역
<p>축산지구 사업지구</p> <p>[가축사육 시설 집적화 가능지역 30,000m] 지구의 개념</p> <p>가축사육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을 집적화 하기 위한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p>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지구</p> <p>[제조, 가공시설 집적화 가능지역 30,000m] 지구의 개념</p> <p>농업 생산가공 및 체험시설 등 소득증대를 위하여 집적화 하기 위한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p>재생에너지지구 사업지구</p> <p>[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가능 지역 50,000m] 지구의 개념</p> <p>재생에너지관련시설들을 통해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집적화 하는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p>경관농업지구 사업지구</p> <p>[유사작물 집단화 및 경관 관리 및 보존 필요 지역] 지구의 개념</p> <p>농촌다움 가치 증진과 일상적 농촌경관 회복 등 농업·농촌 경관의 자원화를 위한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p>농업유산지구 사업지구</p> <p>[농업유산 핵심자원 분포 지역] 지구의 개념</p> <p>농업·생태·지식·문화·경관적 보전가치가 큰 농업유산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p>특성화농업지구 사업지구</p> <p>[특화작물, 친환경 농작물 규모화 지역] 지구의 개념</p> <p>특화작물 또는 친환경 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단위에서 대규모로 관리하는 지구</p> <p>입지가능 용도지역</p> <p>「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자원에 관한법률 시행령」'25년 11월 4일 개정</p>